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규모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Strategies of Architectural Design Industry

유광흠 Yu, Kwang Heum
염철호 Youm, Chirl Ho
임유경 Lim, Yoo Kyoung
진현영 Jin, Hyun Young

(aur

AURI-정책-2013-03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규모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지은이: 유광흠, 염철호, 임유경, 진현영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5호
인쇄: 2013년 8월 3일, 발행: 2013년 8월 3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8,000원, ISBN: 978-89-97468-66-9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 | |
|--------|---|
| 연구책임 |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
| 연구진 | 염철호 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진현영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김혜련 |
| | |
| 연구심의위원 | 오성훈 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전영철 참건축사사무소 대표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
| | |
| 연구자문위원 | 김용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무관
백봉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사무관
백윤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주무관
이 랑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사무관
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유철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무관
윤혁경 에이엔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윤호중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사무관
조한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과장 |
| | |
| TF 위원 | [1분과]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흥수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윤홍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김창균 유타건축사사무소 대표
백민석 대한건축사협회 미래인재위원장
김주경 오우재건축사사무소 대표
유재철 범건축사사무소 이사 |

심재훈 부림건축사사무소 이사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2분과] 기획업무 분리, 대가기준 개선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혜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주무관
왕정한 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위원장
박상진 (주)건축사사무소 도모 대표
윤승현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 대표
전영훈 중앙대학교 교수

[3분과] 표준계약 체계 정립
김의중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오동욱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자문위원
김용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무관
우대성 (주)건축사사무소 오퍼스 대표
김소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동우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미연 청주대학교 교수

[4분과] 건축사 제도개선, 책임강화
박준승 대한건축사협회 법제부위원장
김동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서기관
김지엽 아주대학교 교수
김상길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직 (주)비에스디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유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5분과]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김영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조병섭 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부위원장
이형재 (주)정립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강승희 (주)노바건축사사무소 대표

[6분과] 건축설계 기술력 강화
고일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경제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
한충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석 북서울건축사그룹 신우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연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기술연구소 팀장
권형표 바우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영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구교수
박기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7분과] 건축문화진흥/신진건축사 육성
김태우 (주)디자인그룹아리 대표
김용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김명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무관
이정훈 조호건축 대표
안우성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대표
이순희 안산대학교 교수
서용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국형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8분과] 건축사 해외진출 지원
이강호 주)에시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상대 (주)스페이스연건축사사무소 대표
유철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무관
채철균 광운대학교 교수
박제유 제이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익수 (주)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중연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이사
윤용권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유승렬 (주)AA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9분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마련 지원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강민석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주무관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전영철 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태우 (주)디자인그룹아리 대표
박순천 (주)피씨엠글로벌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인수 (주)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욱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이사

[10분과] 건축엔지니어링
정광량 (주)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
김성호 (주)티섹구조이엔씨 대표
김태철 신원이엔지(주) 대표
마광민 (주)에스엠티이씨 대표
조병섭 엘도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승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주무관
송동범 (주)일구조 대표
서규석 (주)선구조엔지니어링 대표
김규완 (주)기한엔지니어링 대표
정준병 (주)이산 부사장
김선철 (주)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연구요약

제1장 서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건축설계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축 설계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인적자원이 중요한 지식 서비스 산업이다. 또한 국민의 거주공간을 계획하여 안전과 삶의 질을 좌우하며,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은 좋은 도시, 좋은 건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수한 건축문화 형성을 통한 국가 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하위 용역으로 여겨지면서 독립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건축설계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건축설계산업이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전과 품격 등 사회적·문화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산업의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설계산업의 면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실천적인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설계산업 진흥을 위하여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 법령 마련과 건축사법 및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건축설계산업 육성의 필요성

국내 건축설계산업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시장규모는 2009년

3.78조 원으로 약 4조 원 규모이다. 매출규모는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경우 2011년 19.2조 원(2005년 대비 107% 증가)이며, 이 중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은 2011년 5.5조 원(2005년 대비 38% 증가)에 달하고 있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시장은 대형사무소와 소규모 사업체로 양극화된 상태로 시장의 수익 분배가 대형사무소에 편중되었으며, 지역적 불균형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분야에 비해 저하된 생산력을 보이며, 효율성이 낮은 인력 구조와 동시에 열악한 고용환경이 형성되어있다. 또한 국내 업체 중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전체의 3.9%이며, 미국 상위 20개 설계업체의 해외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7%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해외매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건축설계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영세한 산업구조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형사무소가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하위 25%는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화 되었다. 둘째, 설계능력과 무관한 평가기준이 적용되거나(PQ) 시공자 선정에 좌우되어(던키) 설계의 질이 저하되고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발주자와 설계자(감리자)의 계약관계가 공정한 관계가 아닌 관행에 의한 업무처리로 변모되는 등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 셋째, 건축물 설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이 여러 법령·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어 규정 파악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자재·공법 등에 대한 표준화된 DB 부재로 설계자가 자료를 직접 수집하거나 외국 자료에 의존해야하는 등 건축설계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넷째, 현재 국내 건축설계산업의 해외진출은 대형사무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형 설계사무소가 진출 및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규모 아틀리에 형태의 스타 건축가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외 경쟁력이 부실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건축설계산업 육성 방안으로서 3가지의 추진전략 및 8개의 추진과제, 2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 건축설계산업 육성 방안

추진전략으로는 크게 지식기반 산업구조의 정립, 산업성장 인프라 구축,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 3가지로 각각에 대응하는 추진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실천과제
지식기반 산업구조의 정립	1)창의성·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①설계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설계자 선정 ②설계공모방식 개선 및 다양화 ③기술력 위주의 발주 평가기준 개선
	2)공공건축 기획기능 강화	①공공건축 기획업무 제도 도입 ②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체계 구축
	3)공정한 계약체계 성립	①표준계약서 마련 ②설계대가기준 개선 ③설계변경에 대한 기준 적용
산업성장 인프라 구축	1)설계산업 동향진단 및 DB구축	①설계산업 관련 통계자료 개발 및 DB구축 ②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활용
	2)소규모·신진업체 육성기반 마련	①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②건축사 경력관리제도 도입 ③건축사 법인제도 도입
	3)건축문화진흥	①건축물·설계자 정보 제공 ②우수건축자산 지정·지원 ③건축문화 홍보사업 추진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	1)건축설계 기술력 강화	①건축설계 규정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②설계 표준자료 DB 및 BIM 환경 구축 ③건축설계 R&D 투자 확대
	2)해외진출 지원 강화	①해외시장,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②책임보험제도 도입 ③해외시장 개척자금 등 경제적 지원

제4장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

추진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도개선방안과 사업추진방안, 추진전략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출진 방안	내 용	
제도 개선 방안	1)발주제도 및 발주평가기준 개선	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 ②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관련 법령 및 고시 및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③ PQ, 기술제안 등 건축설계 평가기준 개정안 마련
	2)기획업무 분리 및 설계대가기준 개선	① 기획업무의 정의 및 범위 설정 ② 건축사 설계대가기준 개정안 마련 ③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예산운용지침」 개정안 마련
	3)표준계약서 마련 및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① 표준계약서 개정 ②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 「건축사법」 개정 ③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안 마련
	4) 건축사 제도 개선 및 건축사 책임강화	① 「건축사법」 개정안 마련 ② 건축사 책임강화 제도 방안 마련
사업 추진 방안	1)건축정보시스템 구축	① 건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건설계산업 동향 DB 구축 및 보고서 발간사업 추진 ③ 공공건축 DB 수축 사업 추진방안 마련 ④ 건축물 · 설계자 정보제공 사업 추진방안 마련
	2)건축설계 및 DB통합, 건축설계 기술력 강화	① 「한국건축규정(KBC)」 추진방안 마련 ② 건축설계분야 BIM 적용 방안 검토 ③ 한국건축정보 DB(건설자재통합정보시스템) 추진 ④ 건축설계분야 R&D 확대 방안 마련
	3)건축문화진흥 및 신진건축사 육성	①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② 대국민 건축문화 홍보 및 위상 제고
	4)건축사 해외진출 지원	① 시장개척자금 지원, 세제혜택 등 건축사 해외 진출 지원방안 마련 ② 해외진출 공동협의체 구성방안 마련 ③ 건축진흥원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추진 전략	1)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2)추진전략별 연차별 실행방안 수립
	3)추진전략의 실행력 제고

본 연구는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시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결과 3대 추진전략과 8개 추진과제, 그 안에 22개 세부실천과제를 도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설계산업을 지식기반의 산업구조로 정립하기 위하여 창의력·기술력 중심의 발주·평가제도로 개선하고, 기획업무의 기능 강화,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건축설계의 산업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산업의 동향진단 및 DB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소규모·신진업체의 육성기반 마련, 건축문화 진흥방안 등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건축설계산업의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축설계 규정의 통합, R&D 투자 등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방안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결과는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축적된 기존의 다양한 논의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설계산업 육성 추진전략 및 방향을 도출한데에 의의가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들의 실천적 대안 도출을 향후 과제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건축설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기틀로 작동할 것이며, 국가 신성장동력원으로서 건축설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국가 건축정책 마련 및 법·제도 개선, 사업 추진의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건축설계, 건축서비스, 산업, 제도, 개선

TABLE OF CONTENTS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건축설계산업 육성의 필요성	5
1. 건축설계산업의 현황	5
1) 건축설계산업 시장 현황	5
2) 시장구조의 불균형 심화	6
3) 국제 경쟁력 취약	10
2. 건축설계산업의 문제점	13
3.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16
제3장 건축설계산업 육성 방안	19
1. 지식기반 산업구조의 정립	19
1) 창의성,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19
2) 공공건축 기획기능 강화	51
3)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61
2.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77
1) 설계산업 동향 진단 및 DB 구축	77
2) 소규모, 신진업체 육성기반 마련	97
3) 건축문화진흥	110

3.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	120
1)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	120
2) 해외진출 지원 강화	143
제4장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65
1. 제도개선 방안	165
2. 사업추진 방안	168
3. 추진전략	171
4. 결론	172
참고문헌	175

표차례

[표 2-1] 국내 설계시장 추정치	5
[표 2-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규모 및 증감률	6
[표 2-3] 종사자 규모에 따른 매출액 현황(2011년)	7
[표 2-4] 2011년 지역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8
[표 2-5] 영업수지 현황	9
[표 2-6]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인건비, 평균 임금	9
[표 2-7] 미국과 한국의 업체별 비교	12
[표 2-8] 우리나라 건축설계 시장규모(단위: 조원)	13
[표 2-9]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17
[표 3-1] 설계공모 의무적용 기준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21
[표 3-2] 설계공모 관련 업무 의뢰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22
[표 3-3] 설계공모 자격제한 금지 관련 지침개정 방안	24
[표 3-4] 설계공모기간 관련 지침개정 방안	25
[표 3-5] 심사위원 명단 공개 관련 지침개정 방안	26
[표 3-6] 재출물 간소화 관련 지침개정 방안	27
[표 3-7] 심사위원 자격 관련 지침개정 방안	28
[표 3-8] 입상작 비용 지급 관련 지침개정 방안	31
[표 3-9]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를 위한 설계공모 지침개정 방안	33
[표 3-10] 설계공모 다양화를 위한 각 설계공모 관련 지침 재편방향	34
[표 3-1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37
[표 3-12]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38
[표 3-13] 용역금액별 적격심사방식	39
[표 3-14] 현행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40
[표 3-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부 개정안	41

[표 3-1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안 (별표5 제2호 신설안)	42
[표 3-1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안	42
[표 3-1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44
[표 3-19] 용역비 규모에 따른 평가분야별 배점	46
[표 3-20]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	46
[표 3-21]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	47
[표 3-22] 건축·도시 분야 계획 및 설계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예시)	48
[표 3-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부 개정안	48
[표 3-24] 건축설계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	49
[표 3-2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55
[표 3-26]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56
[표 3-2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6
[표 3-28] 설계공모의 활성화 관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58
[표 3-29] 설계대가 산출방식 비교	66
[표 3-3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의 업무항목 재편안	68
[표 3-31] 엔지니어링산업 통계 구축 현황	79
[표 3-32] 건축설계산업 동향보고서 세부내용(안)	88
[표 3-33] 기존 미을만들기 관련 조직과 공공건축지원센터	92
[표 3-34] 해외국가별 주요 개발 매뉴얼	96
[표 3-35]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사업 추진 현황(2012년)	102
[표 3-36] 건축사 업무실적신고 방법 및 실적인정 범위	104
[표 3-37] 전문직 관련 법인 및 특별법 제정시기	107
[표 3-38]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요	111
[표 3-39] 우수건축물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	114
[표 3-40] BIM 발주의 문제점 <출처 : 서종철 외(2005)>	126
[표 3-41] 한국 건설산업의 시설물/분야별 기술수준(기술선진국=100)	131
[표 3-42] 건설기술분야 R&D 추진계획	136
[표 3-43] 국토해양부 R&D 추진절차(국토교통부 정책자료)	139

[표 3-44] 건축설계산업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안)	141
[표 3-45]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선정 전략국가 10개국, 유망국가 18개국	145
[표 3-46]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147
[표 3-47] KOTRA 글로벌연수원 교육과정	153
[표 3-48] 건축설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155
[표 3-49] USTDA 승인 실적 (단위:100만 달러)	163

그림차례

[그림 2-1] OECD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비교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10
[그림 2-2] G7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11
[그림 2-3]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16
[그림 3-1]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중요도 및 수행 내실화 정도에 관한 설문	52
[그림 3-2] 설계공모 지원 절차 (예시)	60
[그림 3-3]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 (설계대가 및 관련제도개선 기초연구, 2007)	69
[그림 3-4] Europan(1회~10회) 당선 프로젝트 중 시행 건수	99
[그림 3-5] 프랑스 건축 문화유산 박물관	117
[그림 3-6] 네덜란드 건축협회(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 NAI)	117
[그림 3-7] 핀란드 Arkki 건축학교의 공간체험 프로그램(左)과 헬싱키 알바알토박물관의 건축 체험 프로그램(右)	118
[그림 3-8] 핀란드 건축가협회 SAFA(2007)에서 발간한 교사용 건축교육 지도서	119
[그림 3-9] BIM 시스템의 개념도(가상건설시스템개발연구단, 2007)	121
[그림 3-10] 미국의 AIA Award 2008 수상작	129
[그림 3-11] u-City 개념도(자료 : 정보통신부)	139
[그림 3-12] LH공사에서 PM을 맡게될 아제르바이잔 신행정도시개발 사업의 개요	149
[그림 3-13] 우리나라 설계업체의 세계시장 진출 현황	150
[그림 3-14] 메가시티 네트워크: 한국현대건축전	151
[그림 3-15] USTDA의 프로젝트 지원 절차	16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건축설계산업의 중요성
 -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건축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제공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경제적 측면) 기술집약적이고 인적자원이 중요한 지식 서비스 산업¹⁾
 - * (취업유발효과) 10억원의 생산이 발생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2007년 기준, 제조업 9.2명 /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업 17.1명)
 - **(부가가치발생) 최종수요 1 증가시 0.8886 (제조업평균 0.5536 / 서비스업평균 0.7796)
 - (사회적 측면) 국민의 거주공간을 계획하여 안전과 삶의 질을 좌우
 - (문화적 측면)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1) 김지엽, 심우일(2011),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향, 대한건축사협회, pp.24–25. 재정리.

*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연간 1억6천만달러의 관광수
입 효과

-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가진 건축설계산업
 - 지식서비스산업인 건축설계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여 부가가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 마련
 -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은 좋은 도시, 좋은 건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수한 건축문화 형성을 통한 국가 문화 창달에 기여
 - 우리나라의 건축설계산업 시장은 서울이 전 세계 2,077개 도시 중 13번째 규모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음²⁾
- * 국내 건축설계산업 경쟁력은 IT기반 행정(세움터), 건설기술력(초고층 건축물 등) 등 관련 산업이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미 도달
- ** 그러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업체당 매출 규모는 OECD 국가 27개국 중 21위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³⁾
- 좋은 도시, 좋은 건축물의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
 -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은 좋은 도시, 좋은 건축물의 자산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격 향상, 도시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산업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⁴⁾
 - 상해(중국), 두바이(UAE), 바르셀로나(스페인), 베를린(독일) 등 세계 유력도시들은 건축분야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문화적·경제적 주도권을 선도함⁵⁾

2)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

3)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52.

4) 유광흠 외(2011), 전개서, p.4.

- 건축설계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로 국민 생활공간의 질을 한층 높이고 건축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⁵⁾
- 낙후된 산업체계 개선을 통한 건축설계산업 육성 시급
 - 건축설계산업은 건설산업의 하위 용역으로 여겨지면서 독립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체계 유지
 - 세계 곳곳에 많은 초고층 건축물을 국내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으나, 설계분야에서는 국내 건축가의 참여가 미미한 실정이며, 국내 유명건축물 설계는 외국 건축사가 독식
 - 설계업체수의 증가와 건축경기의 침체로 건축설계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건축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업무대가의 비현실성으로 어려움 가중

2)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 건축설계산업이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전과 품격 등 사회적문화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산업의 육성방안 마련 필요

□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도출

- 건축설계산업의 면밀한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실천적인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도출

□ 건축설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 법령 마련
- 건축사법 및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제시

□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후속과제 제시

- 세부 실천과제 별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 주관 / 협조 조직 구성 및 중장기 추진 체계 마련

5)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

6) 상계서, p.4.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관련 선행연구의 조사
- 제도 개선의 적합성 분석

□ 현황조사

- 건축설계산업 관련 법, 제도 조사
- 건축설계산업 여건 분석

□ TFT 운영 및 자문회의

- 공무원, 실무자 등 건축설계산업 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
- 개선안의 실천적 추진방안 계획

제2장 건축설계산업 육성의 필요성

1. 건축설계산업의 현황
2. 건축설계산업의 문제점
3.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

1. 건축설계산업의 현황⁷⁾

1) 건축설계산업 시장 현황

□ 시장규모

- 매출액

– 국내 건축설계산업 시장 규모는 2005년 4.16조 원, 2007년 5.43조 원, 2008년 4.34조 원, 2009년 3.78조 원으로, 약 4조 원 규모

[표 2-1] 국내 설계시장 추정치

년도	건축허가 면적 (단위 : 1,000m ²)	추정 국내설계시장					
		건축사 신고금액 적용		통계청 자료금액 적용		대가기준 적용	
		단가(원)	금액	단가(원)	금액	단가(원)	금액
2005	111,506	23,000 (추정)	2조 5646억	36,000	4조 164억	52,000	5조 7983억
2007	150,957	23,164	3조 4968억	36,000	5조 4345억	52,000	7조 8500억
2008	120,658	24,905	3조 50억	36,000	4조 3437억	52,000	6조 2742억
2009	105,137	26,964	2조 8349억	36,000	3조 7849억	52,000	5조 6712억

※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자료,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4, 재인용

7)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6-23. 건축설계산업 현황자료를 인용, 또는 통계자료를 업데이트(2011년 기준)하여 재정리하였음

- 매출증가추이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매출규모는 2011년 19.2조 원으로 2005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그 중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2011년 5.5조 원으로 2005년 대비 38% 증가함
 - 동일한 시기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을 비교해보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정책의 영향 추정 가능⁸⁾

[표 2-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규모 및 증감율

구 분		매출규모 및 증감률(백만원, %)		
		2005년	2011년	증감율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781,823	4,921,523	3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34,584	607,143	159
	계	4,016,407	5,528,666	3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188,747	7,161,347	125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22,678	603,281	17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870,316	5,954,125	218
	계	5,281,741	13,718,752	16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9,298,148	19,247,418	107

※ 출처 : 통계청(20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_9차개정」,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4. 재인용

2) 시장구조의 불균형 심화

□ 업체규모별 불균형

- 대형업체에 매출 편중
 - 건축 및 조경 설계서비스업의 종사자 규모가 50인 이상 사업체 수(482)는 전체 사업체(14,981)의 3.2%이고, 매출 비율은 40.7%
 - 건축 및 조경 설계서비스업 전체 사업체 수의 3.2%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대형사무소가 전체 5.5조 원의 매출액 가운데 40.7%에 해당하는 2.2조 원의 매출을 차지⁹⁾

8)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4.

9)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

- 그러나,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는 종사자 50인 이상의 대형업체에 매출이 편중된 것으로 보이나, 업체수가 아닌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해보아야 실제적인 매출액 분포 현황을 분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의 총 종사자 수는 176,176인(2011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약 89.5백만원
- 50인 이상의 대형 업체의 총 종사자수는 22,192인으로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01.4백만원이며, 10인 미만의 업체의 총 종사자수는 24,148인으로 1인당 평균 매출액은 73.6백만원
- 따라서 50인 이상의 대형업체의 1인당 매출액은 전체 평균에 비해 약 13% 높으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 비해서는 약 38% 가 높은 수준으로 이는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대형업체의 매출 편중 현상을 나타냄

[표 2-3] 종사자 규모에 따른 매출액 현황(2011년)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백만원)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소계	19,247,418	5,528,666	13,718,752
1~4명	1,617,847	997,544	620,303
5~9명	1,573,336	780,408	792,929
10~19명	2,518,201	835,666	1,682,535
20~49명	2,871,228	663,091	2,208,137
50명 이상	10,666,806	2,251,957	8,414,849

※ 출처 : 통계청(20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_9차개정」,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9. 재인용

□ 지역별 불균형

- 서울 및 경기지역 편중
 - 전국 사업체 8,652개 중 48.6%인 4,205개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간연구소, p.68. 재정리.

위치하고, 지역별 매출액은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매출액의 76.0%,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매출액의 70.0%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¹⁰⁾

- 지역 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문제
 - 수도권의 산업 집중화는 산업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보다 경쟁에 의한 출혈이 우려되고, 지방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재로 지역 업체의 낙후 가중¹¹⁾

[표 2-4] 2011년 지역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구 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총 사업체 수 (개)	총 매출액 (백만원)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					
	사업체수	매출액	사업체수	매출액				
서울특별시	2,803	3,672,575	1,784	5,016,007	4,587	8,688,582		
부산광역시	542	204,413	480	1,421,801	1,022	1,626,214		
대구광역시	524	179,041	246	163,363	770	342,404		
인천광역시	267	103,691	167	193,089	434	296,780		
광주광역시	268	81,465	156	155,606	424	237,701		
대전광역시	262	95,481	149	162,365	411	257,846		
울산광역시	192	65,502	223	195,628	415	261,130		
경기도	1,402	529,344	1,566	4,592,344	2,968	5,121,688		
강원도	249	46,108	107	75,825	356	121,933		
충청북도	276	120,689	145	119,939	421	240,628		
충청남도	287	76,940	177	151,857	464	228,797		
전라북도	293	64,101	125	75,835	418	139,936		
전라남도	247	66,949	187	250,297	434	317,264		
경상북도	400	117,141	258	554,947	658	672,088		
경상남도	519	81,321	519	518,206	1,038	599,527		
제주도	121	23,905	40	71,253	161	95,158		
합 계	8,652	5,528,666	6,329	13,718,362	14,981	19,247,028		

※ 출처 : 통계청(20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_9차개정」,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87~89. 재정리

10)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6. 재정리.

11) 상계서, p.36.

□ 생산력 및 고용여건 취약

-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체당 영업 이익률은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8.8% 감소,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0.5%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이 증가함

[표 2-5] 영업수지 현황

산업분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 이익률			단위 : 억 원, %, %p
	2005	2011	증감률	2005	2011	증감률	2005	2011	차이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40,164	55,287	37.7	34,215	51,948	51.8	14.8	6.0	-8.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2,817	137,187	159.7	48,398	126,333	161.0	8.4	7.9	-0.5	

※ 출처 : 통계청(20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_9차개정」,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5. 재인용

- 사업체당 매출액은 엔지니어링 산업이 건축설계 산업에 비해 2.8 배 높고, 1인당 매출액에 있어서도 엔지니어링 산업은 약 8,100만 원,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약 7,500만원임. 특히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이 약 7,400만 원으로 가장 낮음¹²⁾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의 임금을 비교해볼 때 평균 임금의 경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2천8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2천2백만 원으로 가장 낮음¹³⁾

[표 2-6]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인건비, 평균 임금

구분	평균 임금 (백만원)	일인당 매출액 (백만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	25	78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3	75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2	7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8	89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	8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5	78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5	9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	76

※ 출처 : 통계청(2005), 「산업 세세분류 및 종사자 규모별 총괄」,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4. 재정리

12)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4.

13) 상계서, p.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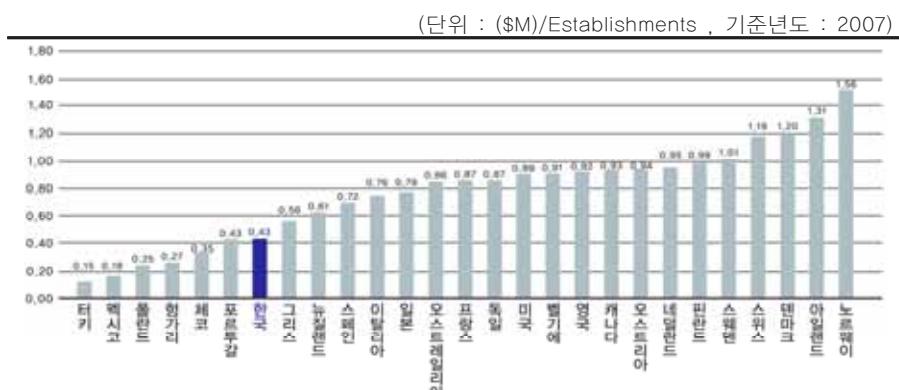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시장 현황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은 대형사무소와 소규모 사업체로 양극화된 상태로 시장의 수익 분배가 대형사무소에 편중되었으며, 지역적 불균형도 높은 상황임. 또한 유사분야에 비해 저하된 생산력을 보이며, 효율성이 낮은 인력구조와 동시에 열악한 고용환경이 형성됨¹⁴⁾

3) 국제경쟁력 취약

□ OECD 27개 국가 중 건축설계 업체당 매출규모 21위

- OECD 국가 업체당 평균 매출 0.77\$M/업체, 한국 0.43\$M/업체
- OECD 27개 국가 중 국내 건축설계업체당 매출규모는 21위이고, OECD 국가의 업체당 평균 매출이 0.77\$Md인데 반해 국내 건축 설계업계는 0.43\$M/업체로 업체당 낮은 매출 규모를 보임¹⁵⁾



※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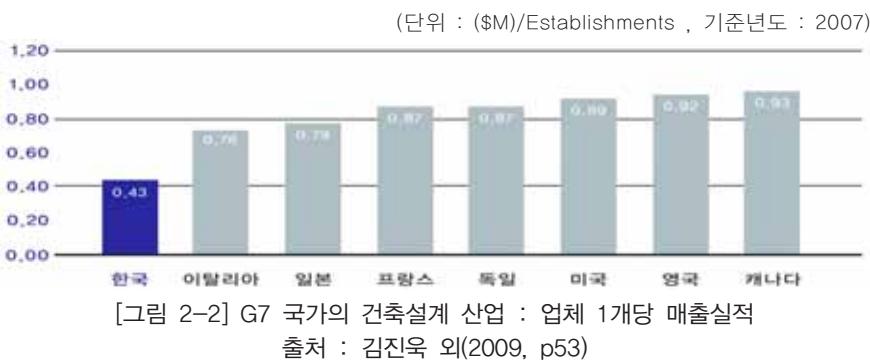
[그림 2-1] OECD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비교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출처 : 김진욱 외(2009, p52)

14)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0.

15)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4.

□ G7 국가의 건축설계업체 평균매출의 절반 수준

- G7 매출 평균 0.81\$M/업체의 약 53%
 - 국내 건축설계업체의 평균매출액을 G7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G7의 평균매출액은 업체당 0.81\$M인데 반해 국내 건축설계업체 평균매출은 0.43\$M/업체로 G7 국가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약 53%¹⁶⁾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경쟁력

- 설계단계별 분업화에 의해 개별 건축서비스전문인의 경쟁력 저하 ^{초래17)}
 - 발주방식이 건축설계 관련자의 조직구성 및 자체 역량, 설계자의 육성까지도 좌우하고 국제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침
 - 국내 발주시스템 특성상 단기간의 기획설계 공모 형태로 운영되어,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단계에 따라 분업화가 이루어져 설계전반에 대한 전문 역량의 축적이 곤란

※ 미국 설계사 조직 특성

- 한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담당자가 연속적으로 업무 담당
- 프로젝트의 업무 분담은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와 프로젝트 디자이너(Project Designer)의 역할이 동등한 지위로 이분화되어 역할 정립
- Marketing Director는 수주 정보 확보만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으로 존재하여 건축주 확보에 주력하며 하위조직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있어 RFP Contents 작성과 같은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등 분야별 전문화가 이루어짐

16) 김진우 외(2009),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4.

17)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43.

□ 건축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 건축설계업체 규모는 세계 수준
 - 2009년 건축설계업계 매출 1위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총매출액 2,610억 원, 직원 수 1,000여명으로, 매출규모면에서는 미국 건축설계업체 7~8위에 해당하고, 그 뒤로 매출 2위 업체인 (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총매출 1,580억 원, 직원 수 1,100여명으로 미국의 9~10위권에 해당¹⁸⁾
- 국내 건축설계업체의 해외진출 저조 및 지역 편중
 - 국내 건축설계업체 중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전체의 3.9%이며, 미국 상위 20개 설계업체의 해외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7%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업체 해외매출은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¹⁹⁾
 - 국내 건축설계업체의 진출지역은 아시아(중동지역 제외) 65.0%, 중동 20.0%로 편중된 상태임. 또한 해외지사 보유업체는 2.2%²⁰⁾

[표 2-7] 미국과 한국의 업체별 비교

	업체명	2009매출규모 (건축서비스)	업체규모 (직원수)	비고
미국	AECOM	5.5조(7,700억)	51,000명	100개국 이상에 대형 프로젝트 실시 건축서비스+엔지니어링
	Gensler	6,000억	2,000명	전세계 35지사 건축서비스 전문
	SOM	3,100억(1,300억)	800명	해외매출 약 1,300억
	KPF	1,300억(930억)	550명	
한국	삼우	2,610억	1,000명	
	희림	1.580억	1,100명	

※ 출처 : ENR, Architectural Records(2010),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9. 재인용

18) 상계서, p.39.

19) 상계서, p.40.

20) 상계서, p.37.

2. 건축설계산업의 문제점

□ 영세한 산업구조

- 우리나라 건축설계 시장규모는 약 4조원 규모(통계청)로 건설시장의 약 2~3%이고, 서울의 경우 시장 규모가 2,077개 도시 중 13번째 규모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은 높은 편

[표 2-8] 우리나라 건축설계 시장규모(단위: 조원)

연도	2005	2007	2009	2011	
건축설계시장	4.0	5.4	3.8	–	(추정치)
건설시장	155	171	195	196	(건설투자액)
비율	2.6%	3.2%	1.9%		

- 직원수 100인 이상의 대형 사무소(상위 1.3%)가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하위 25%는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극심
 - 약 1만개의 사무소 중 직원 수 1명 이하의 설계사무소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1,500위 이하의 사무소들은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

* 건축설계 업체당 매출 규모는 OECD 국가 21번째로 하위권(평균의 58.5%)

□ 불공정한 시장환경

- 설계 능력과 무관한 평가기준이 적용되거나(PQ) 시공자 선정에 좌우되어(턴키) 설계의 질이 저하되고 경쟁력 상실
 - (PQ) 공공건축 설계업체 선정시 광범위하게 이용되나, 건축설계 능력과는 무관한 평가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당락을 좌우
 - (턴키)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원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 이므로, 시공자의 수주 전략에 따라 설계 결과와 질이 결정됨
 - (공모) 창의적인 설계결과를 얻기에 유리한 방법이나 발주청에서 는 예산부족, 복잡한 절차, 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기피하고,

공모 등의 비용 부담이 중·소·신진 설계업체의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

- (기타) 설계비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용역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 수의계약 등에 의해 획일적으로 설계자 선정
- (불공정한 계약관행) 발주자-설계자(감리자)의 계약관계가 불평등한 갑을 관계로 공정한 계약이 아닌 관행에 의해 업무처리
 - 설계 수주를 위해 기획, 조사, 타당성평가 등 발주자의 추가적인 요구까지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업무가 과중하고 설계의 부실 초래

□ 건축설계 환경 취약

- (설계규정) 건축물의 입지, 절차, 기준 등 건축물 설계시 준수해야 할 규정이 여러 법령·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여러 법령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함
 - 각 법령 주관부처에서 수시로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현행 규정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
- (설계환경) 건축물 설계시 필요한 자자공법 등에 대한 표준화된 DB 부재로 설계자가 자료를 직접 수집하거나 외국 자료에 의존
 - 2D 중심의 설계도면 작성 관행으로 단순 도면 작성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새로운 설계 기술 습득이 곤란
- (건축설계 인식 · 정보 부족)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건축설계의 필요성과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 건축주가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적합한 설계자 정보를 찾기 어려우며, 일부 시공자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설계자는 브랜드 가치를 갖지 못하는 실정
 - 소규모 주택·상가의 경우 건축주들이 설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시공자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허가 전문업체 이용

□ 대외 경쟁력 부실

- (세계 수준의 업체 육성 실패)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들의 사무소는 건축가 자신의 이름을 내 건 100명 이하 규모의 아틀리에 또는 아틀리에가 대형사무소로 발전된 형태가 많으나,

- 우리나라에는 중·소규모 아틀리에 형태의 스타 건축가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부재
- 일부 설계 업체는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디자인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음

* ENR 세계 200대 설계 업체 : 삼우건축(189위,'11년) / 희림건축(199위, '10년)

- 대형 랜드마크 건축물은 외국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국내 건축사는 단순 실시설계나 협력만을 수행하는 사례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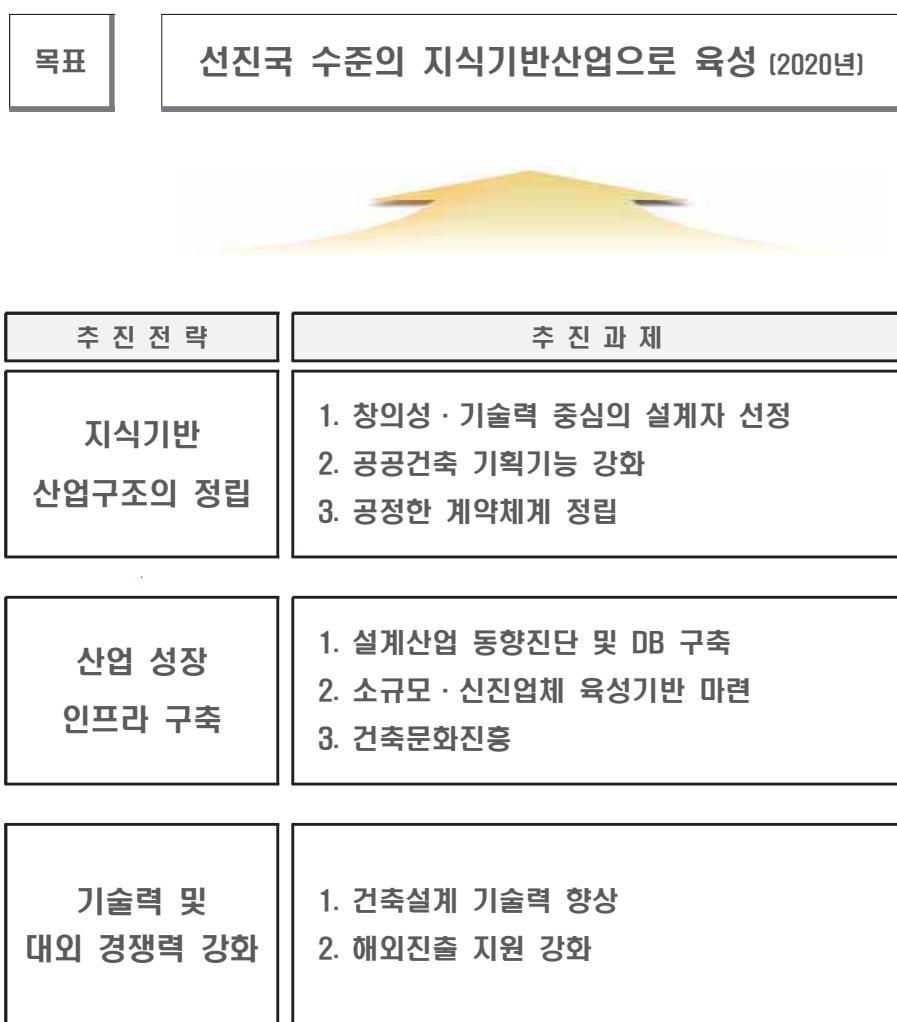
* 용산국제업무지구(D.리베스킨트), 롯데수퍼타워(KPF), 동대문디자인프라자(Z.하디드)

- (해외진출 미약) 해외건설부문의 급성장세와 더불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건축설계업체의 경우 2010 ENR 225대 기업 중 11개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 현재 국내 건축설계산업의 해외진출은 대형사무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형 설계사무소가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임
- 우리나라 업체 중 해외 진출업체는 전체의 3.9%'08)이고, 진출업체의 해외 매출도 5~10%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대부분 아시아·중동에 편중(85%)

* 세계 200대 설계 · ENG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는 1개(삼우,189위)에 불과('11년,ENR)

3.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그림 2-3]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표 2-9]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세부 추진과제
지식 기반 산업 구조의 정립	1.1. 창의성·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1.1.1 설계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설계자 선정 1.1.2 설계공모방식 개선 및 다양화 1.1.3 기술력 위주의 발주 평가기준 개선
	1.2. 공공건축 기획기능 강화	1.2.1 공공건축 기획업무 제도 도입 1.2.2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체계 구축
	1.3.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1.3.1 표준계약서 마련 1.3.2 설계대가기준 개선 1.3.3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 적용
	2.1. 설계산업 동향 진단 및 DB구축	2.1.1 설계산업 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DB구축 2.1.2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2.2. 소규모·신진업체 육성기반 마련	2.2.1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2.2.2 건축사 경력관리제도 도입 2.2.3 건축사 법인제도 도입
	2.3. 건축문화진흥	2.3.1 건축물·설계자 정보 제공 2.3.2 우수건축자산 지정·지원 2.3.3 건축문화 홍보사업 추진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	3.1.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	3.1.1 건축설계 규정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3.1.2 설계 표준자료 DB 및 BIM 환경 구축 3.1.3 건축설계 R&D 투자 확대
	3.2. 해외진출 지원 강화	3.2.1 해외시장,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3.2.2 책임보험제도 도입 3.2.3 해외시장 개척자금 등 경제적 지원

제3장 건축설계산업 육성 방안

1. 지식기반 산업구조의 정립
2.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3.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

1. 지식기반 산업구조의 정립

1) 창의성 ·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관련 사항이 이관될 예정이므로, 현행 제도개선 사항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사항으로 구분하여 적용

개선과제	적용대상	건설기술 관리법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설계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설계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금액 이상으로 • 디종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설계공모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에서 적용대상 규정
기술력 위주의 발주 평가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건축물의 적격 심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각 발주청의 적격심사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에서 평가기준 마련 • (건설기술관리법 • 근거조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건축물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적용근거 마련 • 시행규칙에서 평가기준 마련
설계공모방식 개선 및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금액 이상으로 디종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설계공모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발주청의 설계공모운영지침 등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에서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 마련 • 건설기술관리법 근거조항 삭제

① 설계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설계자 선정

□ 검토배경

-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가 입찰가격으로 결정) 건축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설계의 창의성·예술성 등을 위해 설계공모를 장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설계발주는 적격심사방식을 채용
 - * 최근 6년(2007년~2012년)간 공공건축 설계용역 건수 5,493건(수의계약 제외) 중 설계공모는 961건(17.5%)에 불과하며, 금액규모로는 9%에 불과
 - 5억 이상의 용역에서 적용되는 PQ,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평가 또한 실적과 가격입찰에 의해 설계자가 결정
- (해외에서는 가격 위주의 설계자 선정을 지양) 일본과 미국의 경우, 건축설계는 물품구매나 시공과 달리 설계자에 의해 최종적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저가 가격입찰은 지양할 것을 천명

일본 관공청 시설의 설계업무 위탁방식의 방향 (1991년)

1991년 3월의 건축심의회 회답 「관공청 시설의 설계업무 위탁방식의 방향」에서는 설계자의 선정은 물품구입 등과 같이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

“건축설계는 설계의 내용과 설계의 결과가 미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설계자에 의해 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관공청시설은 국민고유의 자산으로서 높은 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설계료의 저렴함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창의성, 기술력, 경험 등을 적정히 심사한 후에 그 설계업무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현행 설계공모 장려조항의 영향력 미흡) 현행 건축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공모 장려 조항이 있으나, 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한 실정임

【건축기본법】

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② 발주청은 제37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경우에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때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설계공모 의무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건축설계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
 - 적격심사방식(사업수행능력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턴키 등과 마찬가지로 설계자문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고 이의 적절성을 심의하도록 규정

[표 3-1] 설계공모 의무적용 기준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법률	시행령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의 설계를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설계공모 유도를 위한 지원) 발주자가 설계공모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경우, 설계공모 대행, 전문가 파견 등의 지원

*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자의 발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도도부현에서는 「공공기관 발주자 지원기관 인정제도」와 「공공기관 발주업무 지원기술자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발주관계업무의 적절한 실시가 가능한 자의 활용) ① 발주자는 발주와 관련한 공공공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이유로 발주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그 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발주관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가능한 자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관계업무를 적절히 수행 가능한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 준수 및 기밀유지가 확보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그 외 발주관계업무를 공정하게 수행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선정한다.

② 발주자는 ①항에 따라 계약에 의해 발주관계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수행 가능한 자를 선정할 경우 수행하는 발주관계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도도부현은 발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발주관계업무를 적절하게 실시 가능한 자의 육성, 발주관계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의 선정에 관한 협력,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발주자는 설계공모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자에게 발주관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표 3-2] 설계공모 관련 업무 의뢰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법률	시행령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제00조(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등) 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자에게 공모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의 설계를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 있다.

② 설계공모방식 개선 및 다양화

□ 검토배경

- 참가자격 제한, 과다한 제출물 요구,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미흡 등 현행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 개선 필요
 - 실적제한, 지역제한 등 설계공모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사례 다수
 - 운영지침에 90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 다수
 - 도판, 투시도 및 조감도, CG, 모형 등 과도한 제출물 요구로 인해 참여업체의 참여비용 부담 가중
 - 발주처 직원 과반수 참석, 계획 및 설계 이외 전문가의 동일한 평가 등 심사방식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 지속
- 설계공모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특성 및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해야 하나 현재의 설계공모방식으로는 한계
 - 발주처는 공모기간, 비용, 심사 등 절차의 복잡 등을 이유로 설계 공모를 기피하고, 설계자는 참여 비용 부담 가중으로 설계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
 - 설계안을 선정하는 발주와 설계자를 선정하는 발주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설계자 선정 이후의 불합리한 설계변경, 과다설계로 인한 공사비 증대 등의 문제점 다발

- * 설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응답자가 현상설계 당선 또는 기본계획 확정 이후 ‘불합리한 설계변경’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
- ** 발주관계자 대상 인터뷰 조사에서 설계공모안의 실현성 문제 등 ‘과다 설계’를 설계공모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등, 당선에 집착한 과도한 디자인 또한 추후 설계변경의 원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 우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이에 근거한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개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별도의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마련
- (설계공모 시 자격제한 금지)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적 및 지역 등을 제한하는 제한공개공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표 3-3] 설계공모 자격제한 금지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 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 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설계공모는 --- 시행할 수 있다. 단, 실적 및 지역 등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공개공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설계공모는 --- 시행할 수 있다. 단, 실적 및 지역 등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공개공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입찰공고 다.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 다. 실적 및 지역 등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공개공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설계공모 기간규정 강화) 공모기간은 9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표 3-4] 설계공모기간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p>제6조(설계공모의 일정)</p> <p>② 제1항에 의한 일정 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 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p>	<p>제6조(설계공모의 일정)</p> <p>② 제1항에 의한 일정 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 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p>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p>제6조(설계공모의 일정)</p> <p>② 제1항에 의한 일정 중 참가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p>	<p>제6조(설계공모의 일정)</p> <p>② 제1항에 의한 일정 중 참가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p>
설계공모 운영요령	<p>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p> <p>1. 입찰공고</p> <p>나. 계약담당자는 “가-4)”의 공모일정 중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 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p>	<p>1. 입찰공고</p> <p>나. <현행과 같음></p>

-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고, 과당경쟁 등의 우려로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조항 삭제

[표 3-5] 심사위원 명단 공개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심사위원선정 및 방법 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이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 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선정 및 방법 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이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 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8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③ 심사위원은 공모안의 사전검토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안 접수일 전일에 선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명단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심사대상자에게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제척위원은 제외하고 추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공모안 접수일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명단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③ 심사위원은 공모안의 사전검토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안 접수일 전일에 선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명단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심사대상자에게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제척위원은 제외하고 추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으로 10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출물 간소화 및 작성비용 제공규정 강화) 설계공모 제출물에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되, 발주자가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 등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표 3-6] 제출물 간소화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제출도서 등) ①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출도서 등) ①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발주처가 입상작에 대해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1조(제출도서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사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모형제작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해당사업의 특성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출도서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사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발주처가 입상작에 대해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모형제작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해당사업의 특성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2. 등록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2. 등록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

구분	현행	변경안
	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발주처가 입상작에 대해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심사위원은 5~9인으로 구성하되, 건축사 및 건축계획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 (소속기관 직원 참여 인원수 조항은 삭제)
 - 건축계획분야 이외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

[표 3-7] 심사위원 자격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심사위원의 자격)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3.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 5.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제11조(심사위원의 자격)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건축사 및 건축계획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선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3.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

구분	현행	변경안
	<p>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p> <p>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 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이 인정한 자</p> <p>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②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발주기 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 또는 시설 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한다.</p>	<p>상인자</p> <p>5.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p> <p>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 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이 인정한 자</p> <p>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②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발주기 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p>제17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축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건축 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p>	<p>제17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건축사 및 건축계획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조달청 설계자문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축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건축 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p>

구분	현행	변경안
	<p>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원</p> <p>4.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p> <p>5. 운영규정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디자인분과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격을 갖춘자</p> <p>6. 기타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p> <p>제18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① 심사위원은 운영규정에 의해 모집·등록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설계자문위원과 제17조 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5~9인을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소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p>	<p>원</p> <p>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원</p> <p>4.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p> <p>5. 운영규정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디자인분과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격을 갖춘자</p> <p>6. 기타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p> <p>제18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① 심사위원은 운영규정에 의해 모집·등록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설계자문위원과 제17조 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5~9인을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소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p>
설계공모 운영요령	<p>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1. 심사위원회 구성</p> <p>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p> <p>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p>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p>	<p>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1. 심사위원회 구성</p> <p>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p> <p>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축사 및 건축계획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p>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p>

구분	현행	변경안
	<p>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p> <p>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p> <p>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p> <p>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p> <p>5) 기타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 까지에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p> <p>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p> <p>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p> <p>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p> <p>5) 기타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 까지에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규정 강화) 입상작에 대해서는 상금 및 공모안 제작비(O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 등 요구 시)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모안 작성비용 지급을 위해 총사업비 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

[표 3-8] 입상작 비용 지급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p>제16조(입상작) ③발주기관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p>	<p>제16조(입상작) ③발주기관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계약담당자는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p>

구분	현행	변경안
	<p>⑤ 발주기관 등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p>	<p>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⑥ 발주기관 등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p>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p>제25조(입상작) ④ 수요기관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p> <p>⑥ 수요기관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5조(입상작) ④ 수요기관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⑦ 수요기관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p>
설계공모 운영요령	<p>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p> <p>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p>	<p>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p> <p>나. <현행과 같음></p>

- (설계공모방식 다양화) 제안공모방식, 2단계 공모방식 등의 공모방식 관련 규정 구체화
 - 완성된 설계안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제안만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안공모방식을 도입
 - * 디자인적 측면보다는 일상적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공무원과 시민의 사용측면에 특히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대부분의 종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를 선정한 다음 발주청과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설계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모방식 도입 필요
 - ** 설계발주방식에서 가격입찰에 의해 설계자가 선정되는 기준의 발주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절차복잡 및 참여비용 과다로 일반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는 기준의 설계공모방식을 보완하는 효과 기대
 - 1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제안서 심사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 설계안을 제출받는 2단계 설계공모 시행
 - * 소형건축사사무소나 신진건축사 등 설계공모 참여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약조건을 해소하고, 다수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채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단계 공모방식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
 - 현재의 각종 설계공모 관련 지침을 공통사항과 설계공모, 2단계공모, 제안공모의 공모방식별 운영방법으로 재구성하고 각 공모방식 별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표 3-9]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를 위한 설계공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p>제4조(설계공모의 종류)</p> <p>①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 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첨 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2 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p>	<p>제4조(설계공모의 종류)</p> <p>①〈현행과 같음〉</p> <p>②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설계공모, 2단계 공모, 제안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p>

	있다.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설계공모, 2단계 공모, 제안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및 적용대상 2. 용어의 정의 <신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설계공모의 종류 가. 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설계공모, 2단계 공모, 제안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표 3-10] 설계공모 다양화를 위한 각 설계공모 관련 지침 재편방향

구분	현행	재편방향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제6조 설계공모의 일정 제7조 등록 제8조 설계지침서 제9조 질의응답 제10조 제출도서 등 제11조 심사위원의 자격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3조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제7조 등록 제8조 질의응답 제9조 심사위원의 자격 제10조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제11조 저작권 제12조 응모안의 전시 제13조 공모안의 반환

구분	현행	재편방향
	<p>제14조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p> <p>제15조 심사</p> <p>제16조 입상작</p> <p>제17조 저작권</p> <p>제18조 응모안의 전시</p> <p>제19조 공모안의 반환</p> <p>제20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p> <p>제21조 세부기준</p> <p>제22조 재검토기한</p>	<p>제14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p> <p>제15조 세부기준</p> <p>제16조 재검토기한</p> <p>제2장 설계공모 운영방법</p> <p>제3장 아이디어공모 운영방법</p> <p>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p> <p>제1조 절차</p> <p>제2조 일정</p> <p>제3조 설계지침서</p> <p>제4조 제출도서 등</p> <p>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p> <p>제6조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p> <p>제7조 심사</p> <p>제8조 입상작</p>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p> <p>제2조 적용범위</p> <p>제3조 용어의 정의</p> <p>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p> <p>제2장 설계공모 절차</p> <p>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p> <p>제6조 설계공모의 일정</p> <p>제7조 참가등록</p> <p>제8조 설계지침서</p> <p>제9조 사업설명회</p> <p>제10조 질의응답</p> <p>제11조 제출도서 등</p> <p>제12조 심사계획 수립</p> <p>제13조 공모안 검토</p> <p>제14조 사전접촉 금지 등</p> <p>제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제16조 심사위원회의 임무</p> <p>제17조 심사위원의 자격</p>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p> <p>제2조 적용범위</p> <p>제3조 용어의 정의</p> <p>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p> <p>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p> <p>제6조 참가등록</p> <p>제7조 사업설명회</p> <p>제8조 질의응답</p> <p>제9조 사전접촉 금지 등</p> <p>제10조 심사위원회의 임무</p> <p>제11조 심사위원의 자격</p> <p>제12조 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p> <p>제13조 심사위원의 제작기피·회피</p> <p>제14조 회의소집 및 개최</p> <p>제15조 공모안 설명</p> <p>제16조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p> <p>제17조 심사위원 해촉</p> <p>제18조 결과조치</p> <p>제19조 저작권</p> <p>제20조 공모안의 전시</p> <p>제21조 공모안의 반환</p> <p>제22조 심사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p>

구분	현행	재편방향
	<p>제18조 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제19조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0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21조 회의소집 및 개최 제22조 심사방법 등 제23조 공모안 설명 제24조 평가 및 채점 제25조 입상작 제26조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제28조 심사위원 해촉 제29조 결과조치 제30조 저작권 제31조 공모안의 전시 제32조 공모안의 반환 제33조 심사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제34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제35조 기타사항</p>	<p>제23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제24조 기타사항</p> <p>제2장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3장 아이디어공모 운영방법 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p> <p>제1조 설계공모의 일정 제2조 설계지침서 제3조 제출도서 등 제4조 심사계획 수립 제5조 공모안 검토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7조 심사방법 등 제8조 평가 및 채점 제9조 입상작</p>
설계공모 운영요령	<p>제1절 총칙</p> <p>1. 목적 및 적용대상 2. 용어의 정의</p> <p>제2장 설계공모 절차</p> <p>1. 입찰공고 2. 등록 3. 질의점수 및 회신 4. 공모안의 제출 5. 심사위원회의 개최 6. 공모안의 평가 7.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 8. 계약당사자 결정 및 계약체결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 비용 보상 10. 기타사항</p> <p>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1. 심사위원회 구성</p>	<p>제1절 총칙</p> <p>1. 목적 및 적용대상 2. 용어의 정의 3. 입찰공고 4. 등록 5. 질의점수 및 회신 6. 공모안의 제출 7. 계약당사자 결정 및 계약체결 8. 심사위원회 구성 9.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10. 심사위원회 운영 11. 세부기준의 제정 12. 기타사항</p> <p>제2절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3장 아이디어공모 운영방법 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p> <p>1. 심사위원회의 개최 2. 공모안의 평가 3.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p>

구분	현행	재편방향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4. 심사위원회 운영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4.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 비용 보상

[표 3-1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의 설계를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등) ①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공동주택, 문화 및 회의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제00조 ① 공공기관이 영 제00조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00의 공모평가기준

	<p>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모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	---	--

③ 기술력 위주의 발주 평가기준 개선

□ 검토배경

- (건축설계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 부재) 현재 건축설계 관련 발주는 건설기술관련법에 의거하여 기술공사로 취급되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도 건축분야와 기계·토목 등의 분야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
 - 건축분야의 특성상 책임건축사의 자격과 경력이 중요하지만,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서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과 경력뿐 아니라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경력까지 평가
 -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15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업체들은 계획 및 설계관련 기술이 아닌 공법, 구조 등에 관련된 기술로 점수를 채우고 있는 실정

[표 3-12]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 항목	국토교통부		조달청		안전 행정부	
	5,000만원		고시금 액~	건축		
	미만	이상				
설계공모실적	—	—	—	5	—	
참여기술자	50	50	50	50	50	
유사용역수행실적	—	34	15	15	15	
경영상태	34	—	—	—	—	
신용도	4	4	10	10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	10	15	
업무중첩도	12	12	10	10	10	

- (기술력 보다는 가격 위주의 선정) 고시금액 미만 용역이 상당 비중을 차지*
 함에도 불구하고, 고시금액 미만 사업은 수행능력에 비해 입찰가격의 비중이 매우 커 결국 가격에 의한 업체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6년(2007년~2012년)간 공공건축 설계용역 건수 5,493건(수의계약 제외) 중 5억 이상은 22%에 불과, 특히 고시금액 미만이 61%를 차지

-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에도 5억 이하의 용역은 입찰가격의 비중이 수행능력보다 크거나 같은 수준임

[표 3-13] 용역금액별 적격심사방식

구분	PQ	국토교통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능력	가격	능력	가격	능력	가격
~1억원	미적용	30%	70%	10% *	90%	10% *	90%
~2억원							
~고시금액 **	적용	50%	50%	30%	70%	40%	60%
~3억원				50%	50%	50%	50%
~5억원		70%	30%	70%	30%	70%	30%
~10억원							
~30억원		80%	20%				
30억원~							

* 수행능력 대신 경영상태 및 특별신인도 평가

**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2.3억, 행정안전부 3.5억이며, 본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기준

- (설계공모와 유사한 제안서 평가방식) 적격심사에서 기술제안서 평가를 받는 건축설계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설계공모 평가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서도 세부평가항목 및 제출물의 내용이 설계공모와 유사하여 차별성 미흡
- 참여업체들은 제안서이지만 현상설계안과 같은 수준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어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표 3-14] 현행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기능성, 및 안전성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단지계획 등의 적합성	10
	건축계획의 예술성, 작품성 및 기능성	30
	건축구조 및 시공계획의 기술성 및 안전성	15
	주변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와 문화의 기여도	15
	경제성 및 공공성	10
	대안의 제안과 신기술 및 공법의 제시	5
작업계획 및 기법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5
	참여기술자 및 용역실적	10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근거 미흡)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흡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축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전시사업 등에 국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건축설계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적격심사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건축설계에 적합한 평가기준 별도 마련
 -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 축소 및 설계공모 당선실적 등을 추가·확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세부평가기준 별도 마련
 - 우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에 평가기준을 마련

[표 3-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부 개정안

[표 3-1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안 (별표5 제2호 신설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 방법
설계공모 실적 등	5	· 설계공모 당선 및 입선 건수, 각종 수상실적
참여기술자	55	· 참여기술자 등급 · 경력 · 실적 ·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유사용역 실적	15	·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10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등, 재정상태 건실
기술개발 실적	5	·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에 따라 평가
업무중첩도	10	· 참여기술자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표 3-1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안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설계 공모 실적 등	설계공모 당선 및 입선 실적, 각종 수상 실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발주한 설계공모 및 입선 실적 (최근 5년간, 당선 2점, 입선 1점) - 중앙부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 및 도시 관련 학회가 시상한 건축 및 도시 관련 상 수상 실적 (최근 5년간, 건당 1점)
나. 참여 기술 자	(1)책임건축사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마)업무관리능 력 (2) 분야별	[55] (27) 8 9 8 1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8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3) 참여기술자 의 교육훈련, 전 차 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다.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 또는 금액	[1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건축사의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라. 신용 도	(1)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은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 -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재정상태 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실도		
마. 기술 개발 및투 자실 적	(1)개발실적 (2)투자실적 (3)활용실적	[5] (1)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바. 업무 중복 도	(1)책임기술자 (2)분야별 책임 기술자	[10]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표 3-1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제00조(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등) ⑤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00조 ① 공공기관이 영 제00조에 따라 적격심사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하는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영 제00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별표 제3호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평가기준 마련

*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체결기준에서 주관적 평가의 영향력 확대 및 실적 등 객관적 평가 영향력 축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평가기준(안)〉

- 용역비 규모에 따른 평가분야별 배점
 - 용역비 규모에 따라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차별화하고, 고시금 액 이상의 건축설계용역은 객관적 평가는 pass or fail로 평가

[표 3-19] 용역비 규모에 따른 평가분야별 배점

평가분야		1억 미만	1억~고시금액	고시금액~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10	pass of fail
	정성적 평가	60	70	80
입찰가격 평가		20	20	20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은 책임전문인력의 등급·경력, 참여전문인력의 등급·경력,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으로 구성
- 평가배점 배분은 용역금액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책임전문인력의 평가비중을 강화하고, 용역금액의 규모가 큰 경우, 참여전문인력과 수행실적 등의 평가비중을 강화

[표 3-20]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

평가항목		1억 미만	1억~고시금액	고시금액~
책임전문인력	자격	6	1	3
	경력	6	2	3
참여 전문인력		2	2	4
유사용역 수행실적		2	3	6
경영상태		2	1	2
신인도		2	1	2
총점		20	10	20 (18점 이상 pass)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서의 제안서 평가는 설계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수행방법, 기술제안 등 설계자의 기술력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완성된 설계안이나 과도한 제출물을 요구하거나 계획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지양

- 주관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적 평가의 결과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등급간의 점수 격차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주관적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모한 설계자의 제안서 발표 및 면접을 실시하고, 평가점수에도 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

[표 3-21]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

평가 항목	주요 내용	배점		
		(60)	(70)	(80)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10	10	10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기술제안의 적절성·독창성·실현성 등 • 과업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과제를 3~4개 설정	40	45	55
수행계획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5	10	10
제안서 발표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5	5

- (적격심사방식에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중 확대) 적격심사방식에서 가격입찰에 대한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중을 확대함으로서 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을 도모
 - 가격에 대한 능력의 평가비중을 현행 기준보다 한 단계씩 강화하여 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술력의 평가비중을 확대
 - * 건설공사와 달리 건축설계용역의 경우, 현재 설계대가기준에 따라 공사비 대비 산정한 설계비를 예정가격으로 설정하므로 낙찰가 하한율은 현행 행안부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 설계를 방지
 - 현행 각 발주청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별도의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표 3-22] 건축 · 도시 분야 계획 및 설계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예시)

용역금액	능력 : 가격	입찰가격 평가	낙찰가 하한율	낙찰자 결정
10억 이상	80 : 20	$20 - 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96% 이상은 평점 10점	83%	90 점 이상
5억~10억	70 : 30	$3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96% 이상은 평점 25점	86.75%	
고시금액 ~5억	50 : 50	$5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90.5% 이상은 평점 45점	87.75%	95 점 이상
고시금액 미만	30 : 70	$7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89.25% 이상은 평점 65점	87.75%	

-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별도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마련) 설계공모의 평가기준(별표9)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건축설계 용역의 현행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개정(별표10 신설)하여 설계공모와 차별화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마련
 - 우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을 통해 별표10을 신설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는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폐지하고, 설계공모의 제안공모방식으로 대체

[표 3-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②
2. 평가방법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	2. 평가방법

<p>만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p> <p>나.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별표 9에 따라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할 것</p>	<p>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p> <p>나.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별표 10에 따라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할 것</p>
--	--

[표 3-24] 건축설계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

구분		배점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설계팀 경력 및 역량 (30)	건축사의 경력	10	• 책임건축사의 경력
	유사용역 실적	10	• 책임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5년간)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실적	10	• 책임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 실적 (최근5년간)
수행 계획 및 방법 (7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과업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45	• 기술제안의 적절성·독창성·실현성 등
	수행계획	10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제안서 발표	5	• 기술제안서발표 및 면접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활성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지식기반 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근거 마련
 -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일반적으로 기술능력80%, 가격20%로 이루어지므로 적격심사에 비해 기술력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운영
 -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지식기반사업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근거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 근거확보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서비스산업
8.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9.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토지와 관련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생략)

2) 공공건축 기획기능 강화

① 공공건축 기획업무 제도 도입

□ 검토배경

- (건축사업의 불확실성) 건축기획업무는 관련 주체가 다양하며 건축 공간의 영역이 도시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혼재되어 건축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됨
 - 활용가능한 자원이 제한적이고 불확정적일수록 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한 초기 검토와 준비는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건축기획 내실화의 필요성 제기²¹⁾
- (기획업무 부실화) 관련 전문가들은 건축기획업무의 중요도 인식은 매우 높은 반면, 건축기획업무의 내실화 정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는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수행²²⁾
- (국내 기획업무의 문제점) 국내 건축사업에서 기획업무는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는 있으나 기획 전문성 프로세스 부실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²³⁾
 - (전문성 부족) 공공부문에 있어 기획업무를 단순히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획업무 어려움
 - (부실한 기획 프로세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기본구상에 대한 별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 공무원이 기획업무를 직접수행하거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나 가격경쟁입찰의 한계 발생²⁴⁾

21) 임현성, 김영현(2012)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3.

22) 상계서, p.40.

23) 상계서, p.83–87. 재정리

- (총괄전문가 부재) 기획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전문 업역을 가지는 총괄전문가 부재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중요도 및 수행 내실화 정도에 관한 설문〉

- (방법) 건축도시정보센터(www.auric.or.kr)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기간) 2주(2012. 7.30~8.12)

[설문1] 건축 프로젝트 추진 시 사업의 성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타 수행 단계와 비교 했을 때 기획단계는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설문2]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건축기획업무가 전반적으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그림 3-1]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중요도 및 수행 내실화 정도에 관한 설문

<출처 : 임현성 외(2012)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0>

□ 개선방안

- (기획업무 개념 정립) 제도적으로 건축기획업무를 명시하는 것이 건축주(발주자)와 관련 전문가에게 기획업무 범위를 확립하고 대가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음²⁴⁾

24) 상계서, p.85.

- 관련법에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존 기획관련 업무들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기획업무에 대한 일원화 된 인식 제고²⁶⁾
- 기획업무 관련법은 「건축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있음
-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법」을 근거로 「건축기획」에 관한 기념을 정립하고,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기획업무의 독립적인 수행 및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기획업무' 항목 신설

□ 실행안

- (건축법 개정) 건축기획업무에 적용받는 대상은 공공 및 민간의 건축물을 칭하므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법」을 근거로 '건축기획'에 관한 개념을 정립²⁷⁾
 - 이를 근거로 관련법에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업무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기획'을 준용하는 것으로 함
 - 1장 총칙의 제2조 '정의'에서 '건축물의 기획' 항목을 추가

'1장 총칙' 정의 내용 추가
(2조) 정의
 (추가) 16의3 ① “건축물의 기획” 이란 건축물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 위임받은 전문가(건축사, 건설사업관리자, 부동산 전문인력, 기술사 등)가 건축의 발의로부터 설계가 수행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조사, 연구, 자문 행위를 말한다.

- (건축사법 개정) 기획업무가 건축사법에서는 설계기획으로 한정적이며 이미저도 설계의 일환으로 취급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건축사의 독립적인 기획업무 수행 및 적당한 대가기준 마련을 위하

25) 상계서, p.94.

26) 상계서, p.94.

27) 상계서, p.95. 인용 및 재정리.

여 설계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획업무 항목을 독립 신설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삭제)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추가)기획,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업무(추가)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라.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1.2.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삭제)

나. 가.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나.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다.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업무

2. 공사감리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 (예산편성/집행 기준마련) 건축기획업무 수행의 정당한 대가지급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 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지방자체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상에 기획설계업무 내용 반영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담아 매년 1월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으며, 건설비(420목)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고 있음
 - 건설비(420) 집행지침의 적용범위에 기획설계업무를 추가하고,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상에 건설비 목으로 기획설계비를 신설하여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지급 기준 마련

[표 3-2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목번호	목	내역
420	건설비	<p>00. 기획설계비(신설)</p> <p>1. 건축물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가 수행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조사, 연구, 자문 행위에 소요되는 경비</p> <p>2.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p> <p>01. 기본조사설계비</p> <p>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p> <p>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p> <p>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p> <p>02. 실시설계비</p> <p>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p>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18호) 제6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상에 기획설계 내용을 포함

* [별표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구분, 편성목, 통계목)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문 ‘01. 시설비’에 기획설계비 항목 신설

[표 3-26]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p>01. 시설비</p> <p>0. 기획설계비(신설)</p> <p>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가 수행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조사, 연구, 자문 행위에 소요되는 경비</p> <p>나.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p> <p>1. 기본조사설계비</p> <p>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p> <p>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p> <p>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p> <p>가. 실시설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p>나. 공모설계비</p> <p>-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p>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4호)의 “III.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시설비(401-01) 항목으로 기획설계비의 집행기준 신설

[표 3-2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현행	개정
<p>13-1. 시설비(401-01)</p> <p>○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p>	<p>13-1. 시설비(401-01)</p> <p>○ 기획설계비(신설),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p>

②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체계 구축

□ 검토배경

- 지역의 장소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매개체인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공공건축 조성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09)에서는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시범사업으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²⁸⁾

* 국내 공공건축물 수는 약 14만동(2009년 기준)에 달하며, 2008년 공공부문 건축공사 건설비용 기성액은 약 22조원으로 전체 공공건설사업(약 64조원)의 1/3을 차지함²⁹⁾

-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축의 자산규모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공공건축의 시공 및 유지관리측면에서 비용절감, 시설물 이용·사용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사업기획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2009년 건설기술관리법의 기본구상 조항의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 기본구상 업무에 기획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예산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내실있는 기획업무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변화가 시도됨
-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건축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향상을 위해 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조성과정과 유지·관리체계의 확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황임

28)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

29) 연철호 외(2010)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24.

□ 개선방안

-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발주자가 공공건축의 조성과정과 유지·관리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경우 설계공모 대행, 전문가 파견 등의 기획업무지원
 - *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자의 발주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도도부현에서는 「공공기관 발주자 지원기관 인정제도」와 「공공기관 발주업무 지원기술자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발주관계업무의 적절한 실시가 가능한 자의 활용) ① 발주자는 발주와 관련한 공공공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이유로 발주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그 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발주관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가능한 자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관계업무를 적절히 수행 가능한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 준수 및 기밀유지가 확보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그 외 발주관계업무를 공정하게 수행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선정한다.
② 발주자는 ①항에 따라 계약에 의해 발주관계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수행 가능한 자를 선정할 경우 수행하는 발주관계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도도부현은 발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발주관계업무를 적절하게 실시 가능한 자의 육성, 발주관계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의 선정에 관한 협력,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발주자는 설계공모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자에게 발주관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표 3-28] 설계공모의 활성화 관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법률	시행령
<p>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의 설계를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등)</p> <p>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자에게 공모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수 있다.</p>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행정조직의 요청에 의해 설계경기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다양한 발주방식이 선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의 목적 및 특성, 문화적 가치, 설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설계경기방식을 선정하고 설계경기 기획·관리를 통해 행정조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
 - 행정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수반되는 공모지침서 작성, 현장설명 및 심사과정 등을 지원하여 적합한 설계자 선정 지원

1. 설계공모를 위한 발주처의 지침서 작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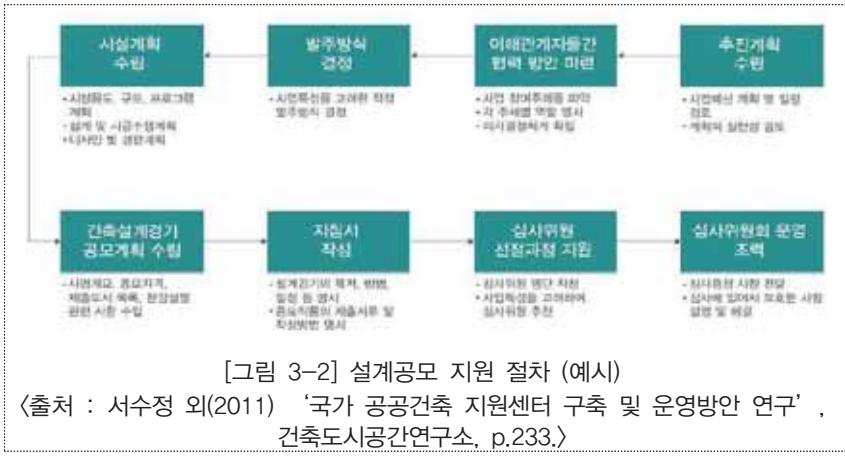
- 사업목적, 시설용도, 지역환경 및 여건, 규모, 예산계획 등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설계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침서 작성 지원
 - * 특히 발주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협의를 통한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세부 계획 지침서를 작성

2. 심사위원 추천

- 발주기관의 사업목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각 전문분야별 적합한 심사위원 추천
 - * 해당 분야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천

3. 심사운영체계 마련

- 사업의 주요 디자인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도록 심사 및 평가를 운영하고 조력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 체계 구축



3)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① 표준계약서 마련³⁰⁾

□ 검토배경

- 현재 국내 건축사의 국외업무 수행 또는 외국 건축사의 국내업무 수행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음
 - * 건축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고시
 - **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분쟁 발생
- 건축물의 용도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의 표준계약서만 보급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젝트별 수행 계약조건의 적용 곤란
- 해외프로젝트 수행시 해당 국가의 계약서는 영문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서의 작성은 변호사가 참여하거나 공증을 이용
 - * 각 나라마다 건축관련 법규와 요구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름
 - ** 외국건축가(자하하디드)와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자하하디드측이 계약대상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여 우리나라의 표준계약서가 아닌 FIDIC(국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맹)의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였으며 설계계약 전문변호사 참여
- 국내 표준계약서는 갑과 을의 상하관계로 규정하여 계약 특수조건은 갑에 의한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음
 - * 기획업무가 서비스의 개념으로 인식(업무수주를 목표로 대가 없는 기획업무 실시)
-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외국 프로젝트의 설계계약서 설계과정 또는 사후관리상의 문제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도록 요구
 - * 미국의 경우 건축물의 포괄적인 보증을 원하며, 국내의 보험회사가 외국 보험회사에 다시 재보험을 가입

30) 대한건축사협회(2012) ‘국내건축사 경쟁력 강화 및 우수건축사 육성방안’ 회의자료 인용 · 참조

- (표준계약서의 문제점) 표준계약서 적용시 대가의 산정 및 지불방법에 따르면 기획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으며. 업무(도서작성)의 범위는 각각 구분하고 있으나, 대가는 동일함
 - 일반적으로 설계비를 ‘평’ 또는 ‘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하고 있고, 기획업무의 대가는 설계대가에서 3~8% 범위 내에서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나 설계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됨
 - 업무의 종류는 기획, 설계(계획, 중간, 실시)로 구분하며, 건축물을 1, 2, 3종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서의 양을 기본, 중급, 상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공업무의 경우 최상급의 설계업무(질)을 요구하고 대가는 2종(기본, 중급)의 적용이 일반적임
 - * 업무의 질은 계속해서 수평 또는 하락할 수 밖에 없음
 - 무리하게 업무를 수주한 건축사는 설계업무의 전부를 외주 용역을 주고 있으며, 계약자의 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일정부분의 수수료 또는 중개료를 받는 설계 재도급의 문제는 부실설계로 이어짐

※ 미국 표준계약서 사례

○ AIA(미국건축사협회), EJCDC(미국연합엔지니어협회), DIBA(미국디자인빌드협회) 등에서 제정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상하의 관계가 아님

○ AIA는 표준계약서의 종류만도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1888년 이래 개정횟수가 16번에 달하는 동안 건축사, 엔지니어, 학자,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이루어짐

○ AIA 표준계약서의 형태

- A.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요구되는 계약서
- B. 발주자와 설계자 또는 CM
- C. 설계자와 설계자가 고용하는 컨설턴트

* 비용이나 대가지급 방식, 전체적인 발주방식, 발주자와 타 계약자간의 관계에 따라 여러 다른 종류의 문서들이 제시되고 있음

** AIA는 필요에 의해 계약서를 구매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음

○ AIA는 표준계약문서를 만들 때에 수많은 참여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계약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의무, 그리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용어 및 조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음
- 계약문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당사자(건축주, 설계자)간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하고, AIA는 6개 부분에 걸쳐 총 68개의 서비스 항목을 제안하고 있음
- 선정된 서비스에 대한 책임소지, 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짐

○ AIA는 설계이전 단계에서 설계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추가업무’로 보고 있음(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계획 차원에서의 서비스와 대지관련 서비스로 구분됨)

□ 개선방안

- (표준계약서 정비) 각 단계별 업무에 따른 다양하고 체계적인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
 - 건축주와 설계자의 역할, 책임, 권한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체계적인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야 계약문화의 개선과 계약시스템의 선진화, 설계능력 향상과 다양한 설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음
- 설계의 품질과 성과를 모니터링
 - 설계과정이 발주자의 객관적 평가와 차후 프로젝트에 반영되는 시스템에 의해 관리될 때 설계 품질의 유지가 가능하며, 결국 설계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에 근본이 될 것임
- 설계자의 책임확대
 - 설계자의 책임이 설계도면 납품으로 끝나 버리는 기존의 체계하에서는 공사비와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의 위험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으며, 설계기술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움
 - 설계오류나 공사비 예산에 맞는 설계 등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설계자는 이에 대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설계도면의 건축자재에 대한 상세표기 의무화

- 일반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재의 표기를 건축주 임의 선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공시 시공업체가 이윤을 득하기 위하여 공사단가를 조정하고, 저급품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시공함으로써 사실상 그 피해가 건축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 친환경,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변화에 욕구되는 기술력에 대한 사항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며,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품질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 건축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임
- 계약서 작성 의무화
 - 기획업무를 비롯한 자문의뢰시 계약서(의뢰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를 1차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
- 불공정거래의 해소
 -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함에 있어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일부 업무 (관련협업자 : 구조, 소방, 설비 제외)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의무화 하여 건축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예방
- 설계자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보호
 - 건축설계자의 지적재산권(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이고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내·외면적 형태, 내용 등 저작자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이 나타나 있는 모든 부분으로써 저작권으로 보호될 자격이 있음
 - * 저작권법 제4조 1항 5호에서 건축저작물을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로 정의
 - 표준계약서상에 설계도면에 대한 설계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발주처 및 시공자가 이를 준수하는 방안 검토

② 설계대가기준 개선

□ 검토배경

- (공사비요율방식) 현행 공사비 요율방식은 부정확한 추정공사비를 대상으로 산정함에 따라 설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업무에 상응하는 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
 - 도서 양을 기준으로 한 도서작성구분은 대부분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오히려 적정한 설계 대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수주 이후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보다 더 많은 투입이 있더라도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한 대가 조정의 사실상 불가능
 - 건축설계대가기준에서 기본업무와 추가업무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건설사업관리,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설계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고 별도 계약이 필요한 업무가 혼재
 - 공사비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체감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요율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설계난이도 구분의 한계
 - 설계도서량을 기준으로 한 설계업무량 구분의 부적절
- (실비정책가산방식)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공사비요율방식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실적자료를 활용한 실비정책가산방식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2012년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에 대한 실비정책가산방식 적용기준을 마련
 - 현행 건축설계대가기준에서는 표준외업무에 대해서는 실비정책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외업무가 과업범위에 관례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실비정책을 계산할 기준이 부재
 -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이 건축사의 설계용역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산업 진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실비정책가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표 3-29] 설계대가 산출방식 비교

구분	공사비요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정의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추정공사비 × 요율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투입된 인원수 × 노임단가 ** 여비, 측량비, 시험비 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대가 산정이 쉬움 ■ 계획된 예산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 설계대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투입비용 반영 가능 ■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산정 가능 (최적설계에 따른 공사비 최소화) ■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 설계변경시 정확한 산출근거제시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의 반영이 어려움 ■ 추정공사비 오차시 과다·과소 설계비에 대한 업체와 분쟁여지 ■ 설계업무범위에 대한 발주청과 설계업체간 의견충돌 ■ 공사비 절감노력 저해 및 과다설계 우려 (설계대가 축소 우려로 설계VE 등에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대가 산정이 어려움 (다양한 설계기초자료 필요) ■ 세부항목별 변동사항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 요구 우려

〈출처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보도자료, 2012.09.27.〉

□ 개선방안

- 공사비요율방식 개선
 - (대가기준구성체계 개선) ‘설계업무’와 ‘건축설계업무’ 명칭이 유사함에 따른 업무범위 혼란을 해소하고 공사비요율표에 의해 산정되는 ‘표준업무’와 추가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표준외업무’를 명확히 구분

[표 3-3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의 업무항목 재편안

현행	개편(안)
<p>1. 설계업무</p> <p>가. 기획업무</p> <p>나. 건축설계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p>다. 사후설계관리업무</p> <p>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 깊이 10m이상) <p>2. 공사감리업무</p> <p>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p> <p>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p> <p>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p> <p>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설계감리 업무 	<p>1. 표준업무</p> <p>가. 설계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p>나. 공사감리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3)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p>2. 표준외 업무</p> <p>가. 설계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 깊이 10m이상) 9) 사후설계관리업무 10)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11)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 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p>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p> <p>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p> <p>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p>12)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p> <p>나. 공사감리 및 관련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설계감리 업무 4)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 5)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6)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7)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8)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9)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10)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	---

* 표준업무 : 요율표에 의해 산정되는 설계업무 및 공사감리업무

* 표준외 업무 : 표준업무와 함께 계약하거나 별도로 계약하는 업무로서 표준업무 대가와는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설계업무, 공사감리업무 및 기타 관련업무

〈출처 : 대한건축학회(2011) 건축사 설계·감리 대각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p.69.〉

- (건축규모별 인건비승수방식으로 전환) 물가상승분이 자동적으로 설계비에 반영되며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설계비 요율 감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규모(연면적)별 인건비 승수방식(인·시간수 기준방식)으로 전환
- (건축설계 대가기준 요율 인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건축설계 대

가기준 요율인상 근거를 마련하여 대가기준 개정

- (설계난이도 판정기준 세분화) 건축물 용도 이외에 설계난이도를 결정하는 판정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축물 종류를 세분화하여 난이도 분류표 재작성
 - (도서량에 따른 요율구분 폐지) 도서작성량에 따른 요율 구분을 폐지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하는 도서종류를 침의 성격으로 제시
- (실비정책가산방식 도입)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과 함께 실비정책가산방식^{**}으로 설계비를 지급하는 방식 도입
-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건축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마련

설비정책가산방식	대가 산출	계상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1일 8시간,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거함
건축사용역대가		
설계감리대가	제경비 (직접인건비*10~120%) +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1주일 40시간, 1개월 22일
건설사업관리대가		1주일 44시간, 1개월 25일

[그림 3-3] 실비정책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 (설계대가 및 관련제도개선 기초연구, 2007)

※ 실비정책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공동주택 건축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 연구의 내용

1. 국내 및 해외의 건축사 대가기준 운영현황 분석
 - 국내의 건축사 대가기준 운영현황 분석
 - 건축사 설계업무의 범위 및 대가기준 적용현황 분석

- 해외의 건축사 대가기준 운영현황 분석
 - 해외 건축사 대가기준 관련 규정 및 실제 발주사례 문헌조사
2. 건축사 용역의 업무분류체계 수립 및 건축사 용역의 유형 결정
-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업무분류체계 수립
 - 업무분류체계는 기본업무를 토대로 마련하되, 추가업무도 확정
 - 확정된 각 업무별 정의 및 포함사항 마련
 - 건축사 용역의 유형을 공사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해외사례와 건축공사 유형화 비교 분석
 - 대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공사의 특성을 유형화
 - 공동주택 대가 산정방식 분석변경
 - 공동주택 대가 산정방식 분석변경(반복동률방식 → 보정율 방식)
 - 공동주택 표준설계기간 분석·결정
 - 공동주택 설계용역 계약연장시 실제 증가금액에 대한 변경기준 제시
3.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마련
- 건축공사 용역유형별 기준인원수 도출
 - 유형별 대표공사를 선정하여 표준모델을 제시
 - 표준모델별 투입인원수 산정을 통해 기준인원수 도출
 - 적정투입인원수 산정을 위한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결정
 - 공사의 규모,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도출
 - 주요 요인별 보정계수와 환산계수로 도출
4.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적정성 검토
- 실제 발주사례 시뮬레이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적정성 검토
 - 실제 발주사례와 가상사례를 적용하여 대가기준 시뮬레이션 시행
 -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사비요율방식과 비교분석
 -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산정기준 보완
5. 건축사 대가기준(수정안) 및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최종안 마련
-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최종안 마련
 - 산정절차, 기준인원수, 보정계수, 업무정의 포함사항 등이 포함
 - 건축사 대가기준(수정안) 마련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사 대가기준 수정안 마련

③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 적용

□ 검토배경

- (빈번한 설계변경 발생)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다르게 설계발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한 저가수주 경향이 있어, 대부분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빈번한 설계변경 발생
 -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 및 관리방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설계변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 설계 과정 중 단계별 설계변경 발생률을 살펴보면, 계획설계 10%, 중간설계 23%, 실시설계 67% 순으로 조사되어, '실시설계'에서 설계변경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이민재, 2008)
-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용역비 지급 근거 및 대가기준 마련 필요) 추가용역비는 공사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설계 프로세스의 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따로 정의된 것이 없음
 -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설계변경 추가용역비의 지급 근거 없음

〈공사계약일반조건_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6호〉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또한, 설계자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는 설계 용역에 대한 설계비 산정의 기준만 있을 뿐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 용역비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설계자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 용역비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설계추가용역비 산정기준 마련 필요

□ 개선방안

1.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2조에서는 건축서비스 발주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하여 산업 환경 현황분석 및 평가, 사업자 협력체계 구축 지원, 그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분석 및 평가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지급근거 명확화)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의 용역계약일반 조건과 자체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설계업무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설계용역비에 대한 지급 근거 명확화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_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8호〉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표준계약서 상에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지급 근거마련)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제5조(대가의 조정)에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지급의 근거 및 기준 마련
 - 미국 표준계약서와 같이 발주자, 설계자간의 계약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활용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재작업을 하게 되는 업무들의 비율을 합산하여 추가용역비 산정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_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20)		일금 원(₩)	
계획설계도서 제출시(20)		일금 원(₩)	건축심의 해당시 심의도서 포함
중간설계도서 제출시(20)		일금 원(₩)	건축허가도서포함
실시설계도서 제출시(30)		일금 원(₩)	
계(100)		일금 원(₩)	부가가치세별도

제5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을”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④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2.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산출 근거 마련

- 설계변경행위에 따른 용역비 정산 합리화
 - 설계단계의 세분화를 통해 이전단계에 대한 설계변경 인정이 용이하도록 조정
 - 변경 보합률이 작더라도, 비용 정산
 - 정산을 위한 Man/Hour 방식 등의 일량 내역화
- 계약 기간의 장기 연장시 설계비 에스컬레이션 반영
 - 장기 중단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인정 필요
 - 계약 기간의 장기 중지시 일반관리비와 보증보험료의 지원
- 재계약 시점에서 오른 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비 재산정

2.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1) 설계산업 동향 진단 및 DB 구축

① 설계산업 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DB 구축

□ 검토배경

- (산업 기초자료의 필요성) 한 분야의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는 필수적이며, 산업의 통계적 지표는 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파악하고 향후 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 지금까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엔지니어링 산업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설계산업은 어떠한 통계적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설계엔지니어링산업동향조사 실시(2008)
 - 정기적으로 건축설계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조사·분석을 통한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국내 건축설계산업의 현 실태 및 해외산업 현황과의 비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정례적인 산업동향 보고서 발간의 필요성 제기
- (건축설계산업 통계현황 미흡) 건축설계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 근거로서 산업구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
 - 현재 건축설계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대비 43%수준이며,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 분야의 산업경쟁력은 매우 취약함³¹⁾
 - 이러한 통계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산업전체를 전반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

31)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3~4.

- 건축설계산업 실태의 경우 사업체 총조사 등 관련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사업체 총조사 자체의 조사 항목이 매우 개략적이고, 건축설계업체 조사를 위한 신규 조사항목의 추가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신규 조사가 필요³²⁾
 - (엔지지어링산업 통계 구축 현황) 엔지니어링산업은 「엔지닝어링산업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및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업자 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자료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 지표로 다양하게 보여주어 정부의 정책수립 등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홈페이지(<http://www.kenca.or.kr>)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주실적순위 및 수주실적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계조회서비스를 통해 산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통계편람을 발행
- * 조사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 11529호)
- ** 조사 방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내역을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32) 조상규 외(2011) 건축기본조사 사전기획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7.

2013.3.23〉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2. 엔지니어링 수주 및 매출 실적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상태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조사 날짜 및 시간
 2. 조사 취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표 3-31] 엔지니어링산업 통계 구축 현황

구 분	통계명	조사목적	작성 시점
엔지니어링 사업자현황	연도별 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연도별 엔지니어링 신고유형에 따른 사업자 수 및 증감을 제공	매 년 12월 31일 기준, 의 년 4 월 공표
	신규 신고 및 신규 취소 현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규신고, 신고취소, 순 증가수 제공	
	주된 기술부문별 현황	기계, 통신정보처리, 건설 등 주된 기술부문별 사업자 수 및 구성비 제공	
	전문분야별 현황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별 사업자 수 및 구성비 제공	
	신고유형별 소재지별 현황	엔지니어링 신고유형에 따른 전업, 겸업 사업자 소재지별 현황을 제공	
	주된 기술부문별 소재지별 현황	기계, 통신정보처리, 건설 등 주된 기술부문별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소재지별 현황을 제공	
기술인력현황	신고유형별 등급별 기술인력 현황	전업, 겸업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별 현황 제공	매 년 12월 31일 기준, 의 년 4 월 공표
	연령별 기술인력 현황	30세 미만부터 55세 이상까지 연령별 기술인력 수 제공	
	주된 기술부문별 등급별 기술인력 현황	기계, 통신정보처리, 건설 등 주된 기술부문별 등급별 기술인력 수를 제공	
	전문분야별 등급별 기술인력 현황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별 등급별 기술인력 수를 제공	
	신고인력 규모별 신고유형별 신고현황	신고인력의 총 인원수에 따른 규모별 분류 및 신고유형별 현황 제공	
	주된 기술부문별 기술사 보유 현황	기계, 통신정보처리, 건설 등 주된 기술부문별 기술사 보유 사업자 수 및 기술사 수, 보유비율을 제공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실태조사	등급별 부문별 조사결과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의 3개 부문에 대해 초급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의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공표한 결과 제공	매 년 7 월 31일 기준, 의 년 1 월 공표
	기술자 등급별 조사결과	엔지니어링 부문 전체의 노임단가를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고급, 중급, 초급기능사 순으로 제공	
	사업부문별 조	전년도와 당해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사결과	기타 부문별 노임단가 및 전년대비 증감액과 증감율 제공	
	임금동향 조사 결과	기계, 통신정보, 건설 등 주된 기술부문별 임금 인상, 인하, 동결 사업자의 수 제공	
	임금인상을 및 인하율 조사결과	5% 미만에서 30% 이상의 임금인상을과 인하율을 보이는 사업자 수 및 구성비 제공	
엔지니어링 서 비 스 업 경영분석	경영상태 평균 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을 통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평균 경영상태 비율을 공표,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을 제공	매 년 3 월 31일 기준, 당 년 9 월 공표
	업종별 부문별 경영분석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을 통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주요 경영분석 지표를 세부부문으로 나누어 제공 (매출규모별, 종원원수별 성장성지표, 수익성지표, 안정성지표, 활동성지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재무제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을 통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평균적인 재무제표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공	
엔지니어링 국외통계	해외 시장규모 및 추세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해외 시장진출규모 및 연도별 추세 제공 (ENR 200대 기업 매출 합계)	매 년 3 월 31일 기준, 당 년 8 월 공표
	부문별 해외시장규모 및 추세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주된 기술부문별 해외 시장진출규모 및 연도별 추세 제공(ENR 200대 기업 매출액 기준)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및 추세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및 연도별 추세 제공 (ENR 200대 기업 매출 합계 대비 국내기업 매출 비율)	

* 출처 : 엔지니어링협회 통계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 (디자인산업 통계 구축 현황) 디자인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에 근거하여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통계조사의 개요

1. 연혁

- 1997 디자인센서스 실시
2002 디자인센서스 실시
2005 '산업디자인통계조사'로 명칭 변경 및 이후 격년으로 조사 실시
200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통계청 승인
2009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실시
2011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영역 확대
(프리랜서 및 1인기업, 고등교육서비스,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2. 조사영역 및 대상

- 실태조사 영역
- 일반기업 디자인 활용여부
 - 일반기업 중 디자인 활용기업
 - 디자인 전문기업
 - 지자체 전수
 - 중앙부처
- 문현조사 영역
- 프리랜서/1인기업
 -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3. 조사항목

조사대상	조사항목
일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이너 종사 여부- 최근 2년이내 디자인 개발 여부
디자인 활용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일반 현황- 디자인 활용 현황- 디자인 역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인적 자원 관리- 디자인 교육 관련- 기타
전문디자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기업 일반 현황- 디자인 인적자원 관리- 디자인 기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인증-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중앙부처 및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활용 현황- 디자인 사업 발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교육 관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랜서/1인기업 매출액-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

- 산업디자인 통계조사는 디자인산업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해 디자인 산업 현황, 투자 및 개발현황, 경쟁력, 인식 및 선호도 등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자료를 확보하고, 디자인 산업현황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구축을 통해 정부,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디자인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트렌드·전략, 디자인리포트, 디자인 통계조사 등의 디자인과 관련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 DB 홈페이지(<http://www.designdb.com/>)를 통해 디자인 통계자료를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
 - * 조사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및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 11526호)
- (산업관련 통계 구축과 공유의 필요성) 엔지니어링산업 및 디자인산업이 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통계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와 같이 건축설계산업의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은 정확한 통계자료의 구축으로부터 시작됨
 - 높은 신뢰도의 산업동향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파악과 시장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축서비스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AIA의 경우, 건축시장의 변동 및 추세를 알기 위해 Firm Survey를 실시하여, 시장 리스크 축소 또는 예방을 모색

※ AIA Firm Survey

1. 개요

- Market trend 파악을 위해 기본적인 Firm Survey와 work on the board survey를 실시
 - Firm survey : 장기적인 조사로 2년 단위로 진행
 - work on the board survey : 단기적인 조사로 4분기마다 실시
 - 보수에 대한 조사(compensation)도 별도로 진행
 - Firm Survey와 compensation 조사를 매년 번갈아 실시

2. 목적 및 활용현황

- Firm Survey는 건축시장의 변동 및 추세를 알기 위해 실시
- 건축시장에서의 리스크 축소 또는 예방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예산

- 광고, 프린팅, 인력비 등을 제외한 순수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연 \$40,000정도)
- 조사 및 정리를 위한 인력은 총 3명이 담당하며, 필요시 위 예산에서 외주를 주기도 함

4. 조사대상

- AIA에 등록(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함(AIA회원은 전체 미국 설계 사무실의 50%정도를 차지)
- 지리적 영향, 규모, Firm의 성격에 대한 고려로 샘플의 왜곡을 최소화

□ 개선방안

-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7조(실태조사)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내외 통계자료를 통한 산업동향 진단) 국내 건축설계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조사분석과 해외 선진국의 관련 통계자료의 비교를 통한 국내 설계산업의 실태 파악³³⁾

33) 김진욱 외 3인,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7

- 국내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조사·분석을 통한
산업동향 진단

* 건축설계산업 실태조사

- 산업 규모(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지표별 증가율 조사
- 생산 관련(관련 산업 부가가치, 1인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 성장률, 노동 생산성기업규모 등) 지표별 증가율 조사
- 고용 관련(취업자 수, 학력별 구성, 남녀 구성, 지역 등) 지표별 증가율 조사
- 해외경쟁력 관련(수입·수출 비중 및 추이, 적·흑자폭, 개방수준 등) 지표별 증가율 조사

- 해외 주요 선진국의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국내 현황과의 비교를 통한 구체적인 국내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현 실태 파악

건축설계산업 현황 조사방안³⁴⁾

1. 조사 항목 개요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실태 파악
→ 건축설계분야 지원 관련 시책의 근거 마련

2. 조사 범위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등록 건축사사무소 기준)
상위 분류인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음(정책적 판단 필요)

3. 관련 국가통계

- ① (2006년 이전)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 ② (2007년 이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체 관련 통계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의 경우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하위 분류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신설됨
 - 지역별, 업체규모별, 종사자 수(남,녀), 매출액, 사업비용 등

4. 표본 조사 시행 방안

① 주요 조사 변수

- 업체 규모, 설립년도, 형태 등 기본 Profile
- 매출, 사업비용, 외주비율, 서비스 종류별 매출 실적 등 영업실태
- 전문 인력 보유 현황, 평균 근속 기간 등 종사자 실태
- BIM 관련 준비 실태, 체감 시장 전망

② 표본 규모 및 소요 예산

- 모집단 업체 수: 약 7820
-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에 의해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와 유사한 표본오차를 목표로 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146sample 에 대한 표본 조사 필요(모집단의 14%에 해당)
 - 조사단가를 5만원으로 가정 시 조사비용은 1회 조사에 약 5730만원 소요
- ③ 조사 주기 등: 매년 초(4월) 시행

5. 관련 해외 통계 및 조사

- ① U.S. Census Bureau, [Economic Census]: 매 5년 주기로 시행(마지막 조사기준년도는 2007년)
- ② AIA, [Architectural Business Survey] / Firm Survey Reports
- ③ Barnes Reports, [Worldwid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Report]
 - Argentina, Australis, Austria, Belgium, Brazil, Choina, Japan, United States 외 다수 국가의 건축설계산업 통계 비교 및 분석

- 세계시장 흐름 속에서의 향후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 구축 방안 마련
- (산업동향 DB 구축 목적 및 활용) 건축설계산업의 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통하여 건축설계산업 현황을 객관적 지표로 다양하게 보여주어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 산업 및 시장환경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설계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자료를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구축을 통해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
- (산업동향 DB 구축 방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시행령 제00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건축설계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제고

34) 조상규 외(2011) 건축기본조사 사전기획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68–69.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4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안)」

제00조(업무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 현황, 건축서비스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며, 실태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함
 - 또한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및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음
 -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기, 조사 취지,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지체없이 공표함
 -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DB를 바탕으로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는 한편,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
- (산업동향 보고서 발간) 건축설계산업이 변화하는 세계경제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한 산업동향 진단이 필요
 - 건축설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지표 구축은 산업의 변화과정과 추후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산업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산업진단을 위한 연간 조사보고서 발간이 필요

[표 3-32] 건축설계산업 동향보고서 세부내용(안)

구분	세부 내용
사업체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종업원 수 - 신규 직원 채용 및 퇴사자 수 - 총 계약 건수 - 주거건축물 및 비주거건축물 계약 건수 - 도시설계 마스터플랜 및 각종 연구 용역 계약 건수 - 계약 미성사로 인한 미수금 프로젝트 수 - 협력업체에 지출하는 외주비 비율 - 지방사무소 및 해외지사 사무소 수 - 업체 관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의뢰인별 지역 분포 - 사무소 직원 건축사자격증 소유 비율 - 사무소 직원 전공 비율 - 사무소 직원 및 현장 직원 중 여성 구성비 - 사무소 직원 연령 구성비 - 협회 가입 비율 - 직원 평균 근속연수 - 직원 평균 연봉 - 매출액 - 매출액 대비 연 인건비 비율
프로젝트 수 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수입비율 및 계약건수 - 의뢰인별 수입비율 및 계약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계약 성격별 수입비율 및 계약건수 - 신규건설과 리노베이션, 재건축, 증축의 수입비율
설계사 무소 제공 서비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별 수입비율 및 계약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수입률이 좋은 서비스 항목 및 낮은 서비스 항목
국제사 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업 진행 사무소 비율 - 국제사업 의뢰인별 수입비율 및 계약건수 - 지난 3년간 전체매출액 대비 국제 사업 매출액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업 지역별 수입비율 및 계약건수 - 국제사업 현지 파트너 임무 - 국내사업과 국제사업 수입성과 관련한 세부사항 비교
보수와 이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활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수금완료기간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율 -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을 한번이상 청구한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 -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 한도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비용 - 국제적 프로젝트 마케팅 비용 - 프로젝트 공급방식에 따른 수입비율 및 계약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공급원에 따른 수입비율 및 계약건수 - 광고서비스 지출율 - 제출 계획안 중 채택 비율 및 계약 건수

정 보 기술	- 직원 1인당 IT관련 연간 평균 지출 액	- 전자업무시스템 사용 여부 및 이용 항목
	- 하드웨어 임대 비율	- 대형 작업 실행방법
	- IT분야 지출 항목	- 업무처리 시 인터넷 활용 정도
	- IT예산 증가 예정 비율	- 기능 습득 방법
직 원 교육	- 사무소 웹사이트 운영 사무소	- BIM도입적용 여부 및 활용 업무
	- 지속적인 지원교육 실시 사무소 비율	- 교육제공자 유형에 따른 지원교육 시간
	- 직원교육 담당자의 임무	- 직원교육 주체
	- 주제에 따른 직원교육 시간	- 외부 교육비 지불율

- (정보제공 업체 지원방안 마련) 업체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업체 정보체계 구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제도적 혜택 없이는 업체 경영정보의 조사 및 취합 현실화 어려움

②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 · 활용

□ 검토배경

- (공공건축의 가치 부각) 공공건축은 산업, 생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삶에 침투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³⁵⁾
 - 2009년 수립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도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어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한 발주방식 개선’, ‘공공건축 DB 구축’ 등이 세부 추진전략으로 책정됨³⁶⁾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사업(2009~2010)을 추진하였고, 2011년부터 공공건축을 매개로 한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확산하여 도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³⁷⁾
- 중앙정부 발주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35)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

36) 상계서, p.2.

37) 상계서, p.2.

- 중앙부처의 공공건축 관련 전체 예산은 약 6조원 이상으로 공공 건축의 국가자산으로서의 비중은 매우 크며, 예산규모도 해마다 지속되고 있음
- 공공건축 관련 신축·증축·이전 예산 3조 243억원, 유지·보유관련 예산 1조 7,127억원 등 공공건축 관련 총예산은 4조 7,370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약 36% 이상 증가하였으며³⁸⁾,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8,049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1조 3,803억원) 등 공공건축 이전과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까지 포함하면 중앙부처 전체 공공건축 관련 예산은 약 6조원 0이상³⁹⁾
- 기존 공공건축 관련 전담조직의 역할과 한계
 - 현행 중앙정부의 공공건축 관련 전담지원 조직으로는 대표적으로 정부청사관리소와 조달청이 있음
 - 정부청사관리소는 수급관리대상에 대해 각 청사의 규모 및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심사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원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공공건축 대상에 해당되는 예산은 총 예산 11.1%에 불과하여 정부청사관리소가 담당하고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적인 상황임
 - 조달청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 조달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획 및 설계과정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는 업무 기능이 취약한 실정
- (공공건축 지원조직 구축 필요)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축 관련 디자인 프로세스를 종괄관리하며, 조달청이나 정부청사관리소 등 유관 중앙부처 공공 건축 전담조직과 연계하여 디자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지원이 필요함⁴⁰⁾

38) 상계서, p.46.

39) 상계서, p.46.

- 또한 전담조직이 없는 중앙부처의 공공건축 기획, 과업지시서 작성 등 발주업무대행을 담당 하며,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 DB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건축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리조직의 설립이 필요함⁴¹⁾
- (공공건축 관련 통계 작성 미흡) 공공건축물 관련 통계 역시 국가자산통계 등에서 전체 부동산 자산의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리청별 건축물 보유 현황 등 세부 정보에 대한 공공 통계 작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신규 조달 물량에 대한 발주 형태 등 세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신규 조사가 필요

□ 개선방안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사업 행정프로세스와 연동하여 기획업무를 지원하고, 디자인 가치를 중시한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며, 지원대상은 행정조직임⁴²⁾
 - 행정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공공부문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로 지역의 커뮤니티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단위의 지역만들기를 지원하는 실행조직인 커뮤니티재생 종합지원센터(마을만들기센터)나 해피하우스센터와 차이가 있음⁴³⁾

40) 상계서, p.4.

41) 상계서, p.4.

42) 상계서, pp.17–18.

43) 상계서, p.17.

[표 3-33] 기존 마을만들기 관련 조직과 공공건축지원센터

구 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해피하우스센터	도시재생사업단 (나. 헬프데스크)	커뮤니티자생 종합지원센터
조직 성격	• 범부처 차원의 행정지원 조직	• 중앙지원조직 • 사업대상지 단위의 실행조직	• 도시활력증진사업 총괄관리 조직	• 장소단위의 마을만들기 실행조직
조직설립 위치	• 중앙단위 • 지자체 차원의 지역센터	• 중앙단위 • 지자체 단위	• 중앙단위	• 중앙단위 • 필요시 읍면동 단위 설치
지원 대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 지역주민	•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 지역주민
주요 업무	• 공공건축 기획업무 컨설팅 • 공공건축 조성과정 관리 • 공공건축가 육성 및 운영 • 공공건축 성과관리 및 교육홍보	• 공동주택 점검·보수 및 환경개선 • 주거복지관련 대국민 충보 및 알선 • 마을만들기 연계	• 신청·평가·사업·완료· 사후에 이르는 시범사업 총괄관리 • 시범사업 모니터링 • 업무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준 제시 • 마을닥터제도를 통한 사업발굴· 계획수립과 지역주체 요청 대응	• 공간재생지원 차원의 커뮤니티 재생사업 지원 프로그램 • 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그램 및 첨보 포털 운영 • 기금운용 • 커뮤니티플랫폼 제공
거버넌스 체계	• 기존 중앙부처 관리조직 및 수요발생 행정조직과 협력	• 지자체 행정, 민관관련업체 협력	• 행정, 지자체 마을만들기센터 협력	• 행정, 민간단체 협력

* 출처 :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8

- (영국 CABE 운용사례) 영국 CABE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대한 독립적 디자인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영국 지역별 디자인리뷰 패널 형성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건축의 품격 향상을 도모
 - (Enabling 제도)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을 위해 공공건축 조성의 기획단계부터 건축 관련 전문가인 'enabler'가 협조하여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설계자 평가과정 및 조달 계획업무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Design Review) 설계단계에서 디자인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우수한 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계자를 지원하는 제도
 - (관련정보 구축 및 관리) 공공건축, 공원 및 공공공간, 주거시설, 문화시설, 재개발 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사례집과 프로젝트 조성과정의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해 간행물을 발간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400건 이상의 사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
- (프랑스 MIQCP 운용사례) 프랑스의 MIQCP는 국가소유 및 공공부분 시설물의 건축적 품질 개선을 장려하는 기관으로 공공건축물의 발주과정 및 절차 개선방안을 추진하며, 공공건축의 현상설계공모경기 운영인 'Jury 제도'를 운영

- (Jury 제도) MIQCP의 설계단계에 해당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건축컨설턴트의 개입으로 설계자 선정, 설계안 평가, 조달계약 방식 관련 자문, 시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 제공 및 교류) 건축전문잡지 또는 학회지에 공공건축 조성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며 주요사안에 대해 이슈화하기 위한 발간업무를 수행하고, 타 유럽국가 공공부문 클라이언트 대표들과 협력하여 각국기관의 조직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유럽의 공공건축 조성과정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정보 교류
- (미국 PBS 운용사례) 미국의 PBS는 공공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며, 공공건축물 조성과 임대 및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포괄적 업무를 수행
 - (Capital Program) 기획단계 업무인 'Capital Program'은 예비기획단계 관련 업무와 타당성조사, 프로그램개발계획안 작성으로 구분되며, 일괄예산 조달 프로세스를 거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Capital Program 과정을 거침
 - (Design Excellence Program) Design Excellence Program 제도는 건축가·엔지니어 선발 과정 및 설계 컨셉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공공건축사업 관련 정보 구축 및 관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 관련 DB 구축 및 활용사업 추진
 - 향후 신축사업보다는 기존시설의 활용과 관리가 보다 중요한 업무로 전환 될 것을 대비하여, 다양한 공공건축 관련 DB를 구축·운영하는 핀란드의 국유재산관리소와 같이 체계적인 DB 구축을 통해 스톡(stock)을 관리 하는 방안 강구⁴⁴⁾
 -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발주주체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른 전체 건축물수 및 조성시기, 면적, 투입예산 정도만 관리되는 수준을 넘어, 공공건축 시설유형별, 지역별 조성현황, 노후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의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며, 또한 유사사업의 발주자 및 설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의 조성과정에 대한 DB시스템 구축될 필요⁴⁵⁾

44) 상계서, p.235.

* 신축시설과 기존시설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DB 관리가 필요하며, 신축시설의 경우, 시설용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일정주기로 갱신하여 관리하고, 향후 유사규모·용도의 건축물 계획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공공건축의 노후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요시 지역수요에 적합한 용도로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DB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시설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⁴⁶⁾

- 장기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체계적 DB구축을 통해 유휴시설의 활용 및 제고에 기여하는 기능까지 전담할 수 있으며, 핀란드의 국유재산관리소와 같이 자체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로 전환 가능⁴⁷⁾

공공건축물 관리 및 발주현황조사 시행방안⁴⁸⁾

1. 조사 항목 개요

- 광의의 공공건축물은 국공유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나, 건축기본조사에서는 국공유 건축물을 기본으로 공공기관 시설까지 범위를 한정하여 ‘발주청’이 건축하여 이용하는 건축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공건축물은 건축물 수로만 보면 전체 건축물 수의 약 2.2%에 불과하나 대부분 많은 수의 공무원과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한 나라의 건축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됨은 물론,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종합적인 inventory 구축 및 실태 파악이 미흡한 실정으로 건축기본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

2. 조사 방법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료 연계를 통한 전수조사
- 실별 면적, 에너지 소비량 등은 관리청, 시설 유형, 지역별로 층화 표본 추출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표본 조사의 경우 별도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공유 건축물은 총 142,615동(2009년 현재)

3. 주요 조사 변수 및 자료 확보 방안

- (발주현황 – 조달정보시스템 연계 항목)발주청, 발주 방식, 설계비, 공사비,

45) 상계서, p.235.

46) 상계서, pp.235–236.

47) 상계서, p.240.

건축 개요

-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연계 항목)관리 및 소유 주체, 장부가액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연계 항목)개별 시설 위치, 규모, 시설 유형, 실별 면적 등 기본 건축물 정보
- (에너지관리공단 DB 연계)시설별 연간 에너지 소비량(에너지원별)

- (매뉴얼 개발 · 보급) 건축물 발주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획단계부터 사후평가에 대한 예산 확보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시설의 최종 사용자 만족도와 유지 · 관리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디자인관리체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알리는 우수한 디자인 가치 확보를 위한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정보 구축 및 보급
 - 행정담당자, 설계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우수한 디자인 가치를 공유하고 좋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건축문화환경을 고무시키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및 수단이 부족한 실정⁴⁹⁾
 - 이에 따라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매뉴얼, 발주자 및 설계자가 참고 할 수 있는 공공건축 지침서, 저탄소 저에너지 건축물 디자인 등을 위한 특화 매뉴얼, 공공건축공사 사후평가 지표 및 관리 매뉴얼 개발 등 다양한 발간사업을 병행하여 공공건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필요⁵⁰⁾
 - 이러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들을 위한 사항이지만, 웹사이트,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건축 및 공공공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 관리 및 축적이 중요⁵¹⁾
 - 또한, 특화된 기술 보급에 대한 매뉴얼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로

48) 조상규 외(2011) 건축기본조사 사전기획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9)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37.

50) 상계서, p.237.

51) 상계서, p.238.

연구관련 업무가 보조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기적 기능 중 하나로 수용될 수 있을 것임⁵²⁾

[표 3-34] 해외국가별 주요 개발 매뉴얼

구 분	영국 C A B E	미국 P B S	프랑스 M I Q C P
우수 공공건축을 홍보·촉진하기 위한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 공원 및 공공공간, 주거시설, 문화시설, 재개발 지역 등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우수사례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자산 보존사업, 시설 근대화 사업 등과 같이 사업특성별 조직 지향 목표, 가치 및 역할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와 간행물을 통해 우수사례 홍보 • 공공건축의 품질 정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MIQCP의 기능 설명 등
발주자 및 설계자가 참고 할 수 있는 공공건축 치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가이드 • 조달계약 업무 천략 • 디자인리뷰 폐널 형성과정 및 운영방안 •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가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ital Program」 운영 절차 및 가이드라인 • 「Design Excellence」 정책 가이드라인 • 사이트 선정 절차의 업무지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용 업무 가이드 • 정책관련 사항 지침서 • MIQCP의 컨설팅이션 업무 관련 세부 정보 제공 등
특화 매뉴얼 및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관련 매뉴얼 • 노인·장애인 시설 디자인을 위한 고려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S관리 사업의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포트폴리오 및 통계자료 발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건축정책체계 연구 및 개선방안 제언 등과 같은 연구 활동 보고서 제공
이미지			

* 출처 :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38

- (우수 공공건축시례 교육 및 홍보) 우수 공공건축시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건축설계산업 문화 선도
 -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좋은 건축물에 대한 전시 혹은 시상식을 개최·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 진행현황 관련 정보를 보급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인식을 제고⁵³⁾
 - 우수 공공건축 사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공공건축 조성과정 및 시설 관련 구축된 DB의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시설유형 별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 홍보자료를 축적하고, 전문가 및

52) 상계서, p.238.

53) 상계서, p.238.

실무자간 사업 조성과정에서의 시사점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다양한 참고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할 필요⁵⁴⁾

- 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업무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소규모 · 신진업체 육성기반 마련

①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 검토배경

- (신진건축사 발굴의 필요성) 젊고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의 필요성 제기⁵⁵⁾
 - 최근 민간부문의 초고층·대형 건축물 설계자 선정시 유명 해외건축사를 선호함에 따라 국내 건축시장이 해외 업체에 잠식⁵⁶⁾
 - 국내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신진건축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⁵⁷⁾
- (신진인력 육성 취약) PQ, 턴키, 수의계약 등은 물론 설계공모도 자본과 경험 이 많은 기존업체가 유리하고 신진건축사의 성장이 제한
 - 신진 건축사들이 이미 업계에 자리를 잡은 기존 건축사들과 경쟁 하여야 하므로 비용·절차 부담으로 창의력 발휘 기회가 미비
 - * 실적과 인지도, 규모 등에서 불리하여 가격 경쟁 및 저가 수주가 불가피
 - 선진국에서는 유럽의 “Europen”, 일본의 “Under 35 공모전” 등과 같이 신진 건축사에게 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
 - * ENYA(AIA에서 추진하는 국제공모), Europen(유럽, 40세미만)

54) 상계서, p.238.

55) 염철호 외(2012)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13.

56) 상계서, p.113.

57) 상계서, p.113.

New Practice(AIA) : 매년 6~7개 회사 선정하여 프로젝트 전시 지원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반영)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에서는 신진 우수설계자 육성 등을 통해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제시⁵⁸⁾
 - 새로운 주거유형 개발, 친환경 녹색주거 설계 등과 같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신진건축가 설계공모를 시행 등을 의무화하는 육성방안 마련 제시⁵⁹⁾

58) 상계서, p.114.

59) 상계서, p.114.

□ (유럽) Europan 사례

- 2년마다 유럽의 40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유럽의 실제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역량있는 신진 건축인력 배출
 - '71년부터 약 20년간 진행되었던 프랑스의 PAN(Programme Architecture Nouvelle : '새로운 건축' 프로그램) 설계경기 프로그램을 '88년부터 유럽 전체로 확대하여 개최
 - * 전체 행사 운영을 위해 국제연합총회(General Assembly)를 설립
- 정책적 필요성, 당면한 도시·건축 이슈 등을 고려하여 매회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도시·건축분야의 담론 형성 및 질적 향상 도모
 - 주거 건축에서 도시 문제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경관, 디자인 등 도시·건축분야의 다학제적 연구를 활성화
- 당선안에 대해 국제전시, 포럼, 출판 등을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당선자와 대상지역 대표(지자체·개발자)간 워크샵 등을 통해 당선안의 실현을 지원
 - 유로판을 통해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MVRDV(네덜란드)가 있으며, 그 밖에 OFIS Architekti, Tania Concko & Pierre Gauthier, BNR architectes, S333 등이 유럽에서 활성화한 활동 중



[그림 3-4] Europan(1회~10회) 당선 프로젝트 중 시행 건수

※ 출처 : 유로판 공식 홈페이지(<http://www.europan-europe.com/>)

□ (뉴욕) ENYA(Emerging New York Architects) 사례

○ 뉴욕시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신진건축가 대상 국제 공모에서도 지역의 개발 이슈와 연계하여 대상지와 주제를 선정하며, 당선된 건축가는 지자체와 협의 기회를 갖는 등 지역 현안 추진에 기여

– ENYA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 명칭은 Young Architects Forum, AIA를 홍보함과 동시에 신진건축가 발굴을 목표로 함

– New Practice 대상 사무소들보다 더 소규모 회사들(1~2인)의 promotion project로 2년에 한번씩 국제 공모를 개최하며, 경력 10년 미만의 인턴 건축사 또는 젊은 건축가를 대상으로 함

– 미국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당선작을 전시하고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진건축가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

* 1등 \$5,000, 2등 \$2,500, 3등 \$1,000, 학생부문 \$1,000의 상금 지급

** 2012년에는 16개국에서 98개 이상의 참가작 제출, 4개 작품 선정

□ (프랑스) Nouveaux Albums des Jeunes Architectes (젊은 건축가의 새 앨범) 사례

○ 프랑스 문화통신부가 젊은 건축가 육성을 위해 1981년부터 추진한 정책

– 35세미안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설계작품 응모를 받고 이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정책

–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젊은 건축가의 새 앨범’을 유럽차원으로 확산하는 한편 문화부 산하에 ‘젊은 건축사 후원회(Cercle de parrainage)’를 구성하여 앨범에 선정된 건축가를 중심으로 젊은 건축가의 활동을 지원

– 문화통신부는 전시회 및 홍보책자 발간, 인터넷 사이트 게시 등을 통해 선정된 건축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노력하는 한편, 후원회를 통해 설계경기 초청, 설계발주, 아이디어 제공 의뢰, 협동작업 의뢰 등을 통해 선정된 건축가에게 프로젝트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

□ 개선방안

- (신진건축사 육성) 창의적인 신진 건축사들의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혀 우리나라를 대표할 건축사를 육성하기 위해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 시범사업 추진
 - *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신진건축사 발굴·육성방안」을 2012년 4월 5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아파트, 도서관, 문화 복지시설 등 전국 10개 사업을 2012년 4월부터 발주하였으며, 이미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신진건축사들을 위한 설계 공모가 개최되고 있음
 - 이들 10개 사업은 모두 실제로 추진되는 공공건축사업으로 5개 공공기관*과 포항시 등 총 6개 기관에서 4월부터 사업일정에 따라 각각 발주
- *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사업 추진) 신진 건축사에게 공공건축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고 건축설계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우선 '12년도에 LH 등 6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용역 10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시행결과 효과,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점차 확대 적용 등 검토
 - 신진건축사 시상 및 설계공모 행사 정례화를 위하여 건축문화대상에 신진건축사 부문을 신설 시상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도시·건축·조경분야의 신진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행사 개최

[표 3-35]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사업 추진 현황(2012년)

발주기관	용도	위치	연면적(m ²)	설계비(백만원)	발주시기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남구 해동 89-17번 지외 7필지	1,653m ²	150	2012.3
도로공사	통행료징수시설 (영업소)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선	536m ²	108	2012.4
수자원공사	관리 및 여과지 동 등 10개동 (제1종 근린)	경북 경산시 자인정수장 내	2,172m ²	100	2012.4
NH공사	도서관	인천 청라	2,000	264	2012.4
	도서관	인천 영종	3,500	450	2012.4
	공동주택	대구 달성군	52,000	1,450	2012.上
	공동주택	춘천 우두동	30,000	920	2012.下
SH공사	공공원룸텔	구로구 천왕동	1,112m ²	80	2012.上
	유스하우징	서대문구 연희동	1,963m ²	158	2012.下
경기도시공사	도서관	광교신도시 호수공원내	20,000m ² (부지면적)	1,000 (추정)	2012.下

* 출처 :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보도자료(2012.04.04.)

- (신진건축사 실적 인증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공모에 당선된 신진건축사의 향후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 설계공모에서 신진건축사의 진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 당선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평가시 가점 부여 조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진입장벽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② 건축사 경력관리제도 도입

□ 검토배경

- (실적관리 왜곡) 국내의 모든 건축설계 실적은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건축사에게 귀속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건축사에 대한 경력 관리는 미흡
 - 대표 건축사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설계도 실적으로 인정하나 업체에 소속된 건축사는 공인된 경력이 없어 성장에 한계

* 대표건축사가 근무하던 업체에서 퇴사하고 이직할 경우에도 전(前)업체에서 수행한 모든 설계 실적을 대표 건축사가 가져가게 됨

- 현행 건축사법과 상법에 따라 설립된 개인 또는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들은 건축설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무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폐해 발생
 - 이는 건축사들이 꾸준하게 업무 경험을 쌓고 독립한 후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제한 요인이 됨
 - 건축사 실적관리시 단순히 설계와 공사감리로만 구분하여 실적만으로 해당 건축사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법적근거) 건축사법 제19조의 2(업무실적의 관리 등)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에 따르면 업무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을 규정
 - (건축사 실적관리 원칙) 건축사법 하에서 건축사 실적 관리는 개인 건축사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크게 개인건축사사무소와 법인건축사사무소를 구분하여 관리. 협회 비회원의 경우 신고를 통해 관리함
 - 개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인 대표 건축사의 명의로 실적이 처리가 되며, 법인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의 명의로 실적 처리
 - 예외적으로 법인 내 등재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를 지정하여 실적을 처리할 수 있으나, 소속건축사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대표자와 등재건축사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실적 인정 불가

- 업무신고실적은 실적을 신고하는 자가 실적관리프로그램에 실적을 입력하고 접수한 후 실적제출서를 출력하여 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건축사가 날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함
- 법인 대표 또는 등재 건축사의 경우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계약되어 수행한 실적만 인정하며, 법인이 아닌 사무소의 경우 해당 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함

[표 3-36] 건축사 업무실적신고 방법 및 실적인정 범위

구분	내용
업무실적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관리프로그램에 실적을 입력하고 접수 -실적 접수 후 실적제출서를 출력하여 사무소 대표자 또는 건축사가 날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제출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지분율(또는 용역금액) 기준으로 하고 이를 통해 확인하지 못할 경우 공동도급 한 건축사 간의 합의된 실적지분합의서 제출
실적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계약되어 수행한 실적만 인정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해당 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으로만 실적 인정 -법인 건축사사무소 간 합병 시 합병 전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로 계약된 업무실적 인정 -법인 상호 변경 시 변경 전 법인명으로 계약된 업무실적 인정 -개인 건축사사무소가 법인으로 변경 또는 설립 시 개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계약된 업무실적 인정 -법인의 소속 건축사가 타 법인으로 이동한 경우 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업무실적관리 업무 처리지침

- (대한건축사협회의 실적 및 경력관리 현황) 실적 및 경력 관리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위탁업무를 맡고 있으며, 협회 내 회원지원실 실적관리팀과 경력관리팀에 수행
 - 실적관리팀은 건축사법에 따른 실적관리, 별점관리, 그리고 감리·자배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경력관리는 건축사법이 아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관리 조항에 따르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와 건축사의 업무의 성격이 달라 건축사의 경력을 기준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문제점) 현행 실적 관리 제도는 신진건축사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
 - 자격 취득과 동시에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는 변호사 등의 타 전문직과 달리 건축사는 자격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동안의 수련을 거친 후에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젊은 건축사들이 수련 기간 이후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건축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실적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표 또는 등재 건축사를 제외한 사무소 소속 건축사의 실적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할 경우 설계 수행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 이는 젊은 건축가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

※ 건축사 중심의 경력 관리(미국)⁶⁰⁾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경력관리가 담당 건축사가 아닌 사무소 대표 및 등재 건축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건축 인허가 도면에 담당 건축사 개인의 날인(stamp)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경력 확인 시 수행 사무소 내 수행 건축사의 재직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사무실에 소속된 건축사 단위의 경력관리가 가능

60) 심경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해외출장보고서 미국 워싱턴·뉴욕」,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pp.7-8.

□ 개선방안

- (경력관리제도 도입) 대표가 아닌 등록한 소속 건축사가 공인된 경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사 개인에 대한 경력 관리제도 마련
 - 공공건축설계 발주시 대표건축사의 실적 외 참여 건축사의 경력도 함께 관리하는 방안 검토
 - 건축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및 실제 수행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산관리
 - * 실적관리 방법과 내용은 별도 용역 수행
 - **실무수련자인 건축사보는 건축사법에 따라 경력관리
건축기사 등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
- 건축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인 구성원과 소속원의 책임과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적 관리를 합리화할 경우, 소속 건축사가 수련 기간을 거쳐 구성원 건축사가 되거나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자신이 행한 업무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③ 건축사 법인제도 도입⁶¹⁾

□ 검토배경

-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그 자격과 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 존재
 - 1949년 변호사법 제정(1949.11.7)을 시작으로 사법서사법(1954.4.3., 이후 법무사법으로 명칭 변경), 세무사법(1961.9.9.), 변리사법(1961.12.23), 공인회계사법(1966.9.1) 등이 제정
 - 자격에 관한 특별법에는 법무법인, 세무법인, 관세사법인 등 직종 별로 고유한 회사 형태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표 5-1]. 이를 조항은 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관세사법), 고유의 회사 형태 규정 필요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신설되는 경우가 많음

61) 염철호 외(2012)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79-180.

[표 3-37] 전문직 관련 법인 및 특별법 제정시기

전문직 특별법	법 제정일	회사형태	법인	법인 조항 신설일
변호사법	1949.11.7.	합명	법무법인	1982.12.31.
		유한	법무법인(유한)	2005.7.28.
		조합	법무조합	
공인회계사법	1966.9.1.	유한	회계법인	1968.12.31.
세무사법	1961.9.9.		세무법인	1961.9.9.
관세사법	1996.7.1.		관세사법인	1996.7.1.
법무사법	1954.4.3.	합명	법무사합동법인	1997.1.1.
변리사법	1961.12.23.		변리사법인	2000.7.1.
공인노무사법	1985.7.1.		노무법인	1990.4.7.

- 건축사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 타 전문직의 특성을 일부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업역의 특성을 반영한 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타 전문직은 전문직 법인을 통해 각 전문가가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자적 수행이 힘든 업무는 협동하여 대응
-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와 건축사사무소 개설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63년 12월 16일 제정. 제2장에서 건축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제5장에서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신고,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규정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다양한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협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필요
 - 건축사법인 제도를 통해 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구성원 건축사의 실적을 공유하고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건축시장 진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건축사법인 도입은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규모의 사무소들이 균형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전문직의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공유함
 - 자기책임 하에,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위임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전문교육과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 단순한 영업동기 이상의 직업윤리를 요한다는 점, 직렬별 특별법이 존재⁶²⁾
 - 전문직 법인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을 의미⁶³⁾
- 개별 건축사들이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서로 협동하여 보다 안정적인 회사 운영 체계와 재무 구조를 갖출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대외 신인도 및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음

62) 박상근(2002), 「전문직을 위한 회사형태에 관한 연구」, 법조 2002:12(Vol. 555), p.237-238.

63) 이훈종(2005),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p.301.

□ 개선방안

- (건축사법인 도입) 건축사무소에 관련 기술 집적, 건축설계인력 양성, 건축행정의 공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건축사법인 신설 요구
 - 건축 업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회사형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
 - 건축물의 품격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사무소에 관련 기술이 집적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설계인력의 양성과 건축행정의 공공적 업무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개정을 통한 “건축사법인”的 신설 요구
- * 2010년 8월 27일, 박기춘의원은 건축사법인 신설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발의안 의안번호 제1809193)

※ 건축사법 개정안 개요

□ 추진배경

- 건축사 업무의 조직화·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변화하는 건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건축물 유지·관리, 조사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건축사 책임 하에 일부 대행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 형태로서 건축사법인 도입 논의

□ 주요내용

- 건축사무소에 관련 기술 집적, 건축설계인력 양성, 건축행정의 공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건축사법인 신설 요구
- 업무법인, 신고기준 등 법인 구성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실행안

- (건축사법 개정) 타 전문직종(세무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의 법인(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과 같이 5인 이상의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사법인”을 신설하여,
 - 법인의 명칭사용 의무와 건축사법인 구성원은 건축사무소에 소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사법인의 업무범위, 신고기준 및 신고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건축사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개정(제23조의2 신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설)

제23조의2 (건축사법인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건축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인이 아닌 자는 건축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건축사법인의 구성원은 건축사법인 이외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익성을 위한 업무를 건축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위탁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법인의 구성, 인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문화진흥

① 건축물 · 설계자 정보 제공

□ 검토배경

- (건축문화 정보의 가치) 건축문화는 지역민의 삶에 담긴 종체적 의식과 행위를 포괄하는 자연문화 형성의 배경이 되며, 지역민의 가치관, 동질성, 연대성의 근간이 됨
 - (지역성) 고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가진 건축물은 도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민의 자긍심을 유발하고 지역 특성 강화
 - (경제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난 건축문화의 적절한 활용과 관리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수입증대, 재산가치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어메니티) 건축문화는 도시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전통과 침단, 인공과 자연 등이 조화된 도시공간 조성은 생활환경의 어메니티를 증진시킴
 - (정책수립의 토대) 건축문화 정보는 지역재생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고, 지역 거버넌스 형성의 바탕을 제공

- (건축물 · 설계자 정보구축 사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는 건축 · 도시 분야 전문정보의 필요성에 의해 1997년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내에 설립되었으며, 건축 · 도시 분야 연구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건축물 정보 및 설계경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건축사진·답사, 한국현대건축물, 한국 전통건축물, 유럽건축물, 설계경기·공모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의 하위 메뉴는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구글(Google)의 지도데이터를 사용한 위치지도가 연동
 - 건축물 관련 세부정보에는 건축물명, 주소, 웹 주소,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내부에서 만들어진 가이드 링크 수, 준공년도, 건축가, 예술가, 건축물, 위도/경도, 기능, 용도 수상내용 등을 수록

[표 3-38]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요

DB 명칭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DB 정보 서비스	Off-line DB	–	–
	On-line DB	Web Mobile App	http://www.auric.or.kr –
프로젝트 범주	국내 · 외 건축물, 건축가, 지정문화재, 설계경기 · 공모전 지도: 구글(Google)의 지도데이터를 사용한 위치지도 연동 Facts: 건축물명, 주소, 웹 주소,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내부에서 만들어진 가이드 링크 수, 준공년도, 건축가, 예술가, 건축물, 위도/경도, 기능, 용도 수상내용 등의 정보를 수록 Comment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건축물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 건축물 사진 및 이미지		
프로젝트 상세정보			

* 출처 : <http://www.auric.or.kr>

- (필요성) 건축자산의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지역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신뢰확보가 가능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 제공 및 공유 필요
 - 건축자산 관련 각종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건축자산 홍보 추진

□ 개선방안

- (건축물 · 설계자 정보공유)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건축물 · 설계자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가에 대한 홍보 강화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특정 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아둔 정보창고 / 기록보관소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를 인터넷 포털 지도 서비스와 연계*하여 건축설계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SNS를 통해 정보 공유

*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지도정보에서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로 연결

※ 국토해양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우리나라 건축자산 DB를 구축하고, 모바일웹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공유(2012.10)



- 건축물 검색(명칭, QR코드)을 통해 설계자 정보·평가는 물론 해당

설계자의 대표적인 작품까지 연계하여 확인

* 건축주, 설계자 등이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

- 발주자(건축주)가 설계품질 및 설계자 만족도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 (공공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

② 우수건축자산 지정 · 지원

□ 검토배경

- (우수건축자산의 지정의 필요성) 지역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건축물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재정적 · 행정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제도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 및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 있음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모두가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 유도
 - 또한 지정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우수 건축물의 홍보 및 시상 등의 지원방안 마련
- (건축자산진흥구역의 필요성)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요 건축 자산을 중심으로 도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
 - 건축자산진흥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 시설물 및 외부공간에 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을 포함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따르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 제공
- (우수건축물 정보 구축) 우수건축물 관리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기
 - 정보의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지역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

고 시민의 신뢰확보가 가능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공개

- 건축자산 관련 각종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건축자산 홍보 가능
- 전국단위의 우수한 건축물의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우수 건축물 관리 시스템의 개발 필요
- 장기적으로는 우수건축물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 또한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성 있음

□ 개선방안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마련

[표 3-39] 우수건축물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제0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 표시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에게 해당 건축물등에 대한 설명서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는데에 필요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는 우수 건	제0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① 영 제00조제1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우수건축물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에 관한 설명서 2. 설계도서 및 모형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우수건축물등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p> <p>④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축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우수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도지사로부터 우수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건축물등에 붙일 수 있다.</p>	<p>제00조 (우수건축물등의 표지) 영 제00조제4항에 따른 우수건축물등의 표지는 별표 00와 같다.</p>
---	--	---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근거 마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건축자산 밀집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근거 마련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문화 홍보사업 추진

□ 검토배경

- 건축과 관련된 아카이브, 연구, 전시, 교육, 홍보, 교류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도시개발과 건축의 경험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료 구축과 우리시대의 도시건축행위가 다음 세대의 문화자산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한 도시·건축분야 문화중심 시설 및 프로그램 필요
 - 건축 및 건축문화 가치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 건축설계산업이 디자인 가치가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 정착

□ 개선방안

- (건축도시 박물관 건립) 건축·도시 자료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건축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축도시박물관 건립
 - * (가칭)건축도시박물관(국토부), 디자인미술관(미정), 국가기록박물관(국가기록원), 디지털문화유산박물관(문화재청), 국립자연사박물관(문화부)
 - 건축박물관은 대중의 건축문화수준의 향상으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축을 홍보하는 마켓플레이스로서 관련 산업진흥을 도모하며, 국가차원의 도시건축기록물 보존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도시건축분야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 및 전문인을 위한 평생 교육기관 역할을 하며, 도시건축분야의 전문연구시설로서 국제 학술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건축·도시분야 정보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담당

※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 (*la Cite de l'Architecture et de la Patrimoine*)은 기존의 프랑스 건축 연구소(IFA)를 흡수하여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수집활동과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 현대의 문제사항 들에 대한 답변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을 제안하는 종합 건축 예술 공간을 표방. 최근 두세기 동안의 건축에 대한 현재의 건축동향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해석과 질문들을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장소



[그림 3-5] 프랑스 건축 문화유산 박물관
(*la Cite de l'Architecture et de la Patrimoine*)

*출처 : 국토해양부(2009), 건축정책기본계획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네덜란드 건축협회(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 NAI)는 가장 적극적으로 건축분야의 자료보존, 전시 및 도서 발간 작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판단됨. 네덜란드 최대의 문화기관으로서 전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그 연구 성과를 대중화시키고 담론화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건축문화기관



[그림 3-6] 네덜란드 건축협회(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 NAI)

*출처 : 국토해양부(2009), 건축정책기본계획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박물관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반연(‘11.12)하여 설계·시공’ 13~‘16) 후 박물관 개관’ 17)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추진)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출판·전시·축제 등 사업 추진
 - 근본적으로 건축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쇄신하는 것은 무엇보

다 건축업계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며,

- 국가와 업계는 건축설계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국가 신 성장 동력 산업이며, 건축문화 창조를 아우르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초교육 지원 마련
 -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을 기반으로 건축문화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초교육 프로그램 제공
- ※ 네덜란드 · 핀란드 · 영국 등에서는 일상적인 생활환경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과 도시환경이 지닌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건축센터, 건축학교 등 관련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학생들의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건축기초교육을 시행 중



[그림 3-7] 핀란드 Arkki 건축학교의 공간체험 프로그램(左)과 헬싱키
알바알토박물관의 건축 체험 프로그램(右)

*출처 : 국토해양부(2009), 건축정책기본계획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문화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건축문화의 발굴과 보급 등 건축문화 진흥과 홍보활동을 통해 건축설계산업의 이미지 개선
 -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건축설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최근 건축관련 영화, 드라마, TV프로그램 등으로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이미지 제고

○ 건축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및 보급 지원

※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건축기초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재 사례로
핀란드 건축가협회 SAFA(2007)에서 발간한 교사용 건축교육 지도서 「건축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으며, 이 책은 일반 건축교육을 진흥하고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입문서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의 건축교육에 사용되며 주요 내용은 구조와 건설, 공간과 재료, 차원과 비례·형태, 구성, 빛과 색채, 우리의 주변환경과 문화유산에 대해 다루고 있음



[그림 3-8] 핀란드 건축가협회 SAFA(2007)에서 발간한
교사용 건축교육 지도서

*출처 : 국토해양부(2009), 건축정책기본계획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

1)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

① 건축설계 규정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 검토배경

- (건축 설계규정의 비효율성) 건축물 설계 규정이 여러 법령에서 규정되어 하나의 건물을 설계할 경우에도 여러 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므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쟁력 상실
 - 규정별로 소관부처가 다르고, 타부처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충돌하거나 운영상 미흡한 사례* 발생
 - * 화재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법은 배연시설을, 소방시설법은 제연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두 설비를 함께 운용하기 위한 기준은 부재
 - 해외 사업 수주시에도 국내 기준 적용 곤란
 - * 해외 기준 활용시 해당 국가의 시공·자재 업체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건축과 공간환경의 통합계획 필요성) 도시계획과 건축설계가 분리되어 진행됨으로써 건축과 공간환경이 통합된 장소지향적 설계가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획일적인 도시경관 및 가로공간이 반복 조성되는 문제 발생⁶⁴⁾
 - 2차원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이후에 블록별·필지별 건축설계업무가 수행됨으로써 건축과 도시가 일체화된 도시공간의 조성이 곤란한 실정
 - 공공공간(도로, 공원 등)에 대해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2차원 개발계획 이후에 실시설계(토목, 조경)가 진행됨으로써 ‘설계된’ 공공공간의 조성이 불가능한 실정
 - 3차원적인 마스터플랜과 공공공간에 대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64) 국토해양부(2010),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 해설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0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설계(urban design)’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 (건축설계산업 생산성 향상 요구) BIM을 활용한 새로운 건축설계기법의 적용으로 건축설계산업의 생산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⁶⁵⁾
 - 미국의 대규모 건축설계회사(종사자 100인 이상)들은 BIM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Business Of Architecture, AIA)
 - 국내의 BIM 도입은 초기단계 수준이며, BIM의 확산에 따른 건축 설계자 저작권 문제가 예상되어 국내에서 자체적인 BIM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실정
 - BIM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당 건축·도시 프로젝트의 관련 정보를 구조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혁신이 기대됨



[그림 3-9] BIM 시스템의 개념도(가상건설시스템개발연구단, 2007)

*자료 : 국토해양부(2010),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해설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08~109.

- (성능중심 기준 도입)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주제에 맞추어 시설물의 성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건축기준의 점진적 변경이 필요
 - 건축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 향상 등을 위한 건축기준 도입과 관련 기술개발 유도

65) 국토해양부,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 해설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0), p108~109

□ 개선방안

- (KBC의 목적) 재난, 화재 등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중 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축 활동을 보장하고,
 - 건축물의 성능을 강조한 설계법과 시공법을 포함하는 건축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토록하고,
 - 건축활동을 행정적으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 해외의 선진적인 전축표준설계기준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건축물 설계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한국 건축설계 규정(KBC)」으로 통합 공고하여 사용자 편의성·효율성 확보
 - * 건축법에 「한국 건축설계 규정」 통합공고 근거를 마련 (규제심사증)
 - 현재 KBC-S(구조), KBC-E(환경), KBC-F(화재), KBC-MC(재료·시공)으로 나누어 관련규정 통합을 위한 연구(R&D) 추진중 (1차년도, ~'12.8)

* 「한국 건축설계 규정(KBC)」 관련규정 현황

KBC-S :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 등

KBC-E : 건축법, 에너지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법, 각종 시설기준 등

KBC-F :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법, 초고층재난관리특별법 등

KBC-MC : 건축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KBC-P :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편의증진법 등 (2차년도부터 추진)

- 장기적으로 건축 관련 제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세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번역하여 보급

* 美IBC도 건축 구조, 소방, 재료·시공, 에너지, 설비 규정 등을 모두 포함

- (건축법 체계 정비)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 저탄소 녹색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 공공건축물 조성관리에 관한 법 등은 기존 건축법에서 일부 다루고

있지만, 여러 법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어 전체 면모를 알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⁶⁶⁾

- 초고층 건물에 관한 법, 건축문화진흥에 관한 법은 기존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므로 건축법 체계에 포함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건축법 체계정비에 있어서는 현재 다수의 하위 법령이나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을 검토하여 법률사항과 명령사항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거가 미약한 위임입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작업 병행
- (관련 법령간의 효율적 연계·통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등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등 관련 법령의 정비⁶⁷⁾
 - 실효성을 담보하는 국토환경 디자인 방안으로서 국계법, 경관법, 건축기본법의 통합적 실행·관리체계를 구축
 -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법정 계획들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간 관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이나 연계를 추진
- (건축 및 도시환경의 통합적 디자인관리)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조직 체계를 고려한 여러 유형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리 프로세스와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⁶⁸⁾
 -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유형 중 적합한 건축·도시 디자인 관리 프로세스를 수용·변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적합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적용토록 유도
 - 전담조직의 역할 및 운영기준 등을 담은 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

66) 유광흠(2010),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15~134

67) 국토해양부(2010),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 해설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3~74

68) 상계서, p75

- (성능중심 건축기준)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중심으로 건축 기준의 전환 ⁶⁹⁾
 - 기존 건축기준의 시설물별 자재 및 시공방법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
 - * 미국의 경우, 성능설계법이 FEMA 및 PEER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실제 설계에도 반영되고 있음
 - 에너지절약, 친환경, 생태조화성, 안전성, 사용성 등 건축 분야 주요 성능별로 기준을 제정
 - 건축물의 용도별, 기능별, 유형별 성능기준화 방안 마련
 -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능기반의 설계개념 도입
 -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설계 및 시공방법의 선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 기술개발을 유도
 -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성능중심 정비 및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확보
 - ※ 시방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의무화하여 G7수준의 안전을 달성을 도모(‘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 제정, 2010.6)

② 설계 표준자료 DB 및 BIM 환경 구축

□ 검토배경

- (설계 자료·DB 츠약)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인체 및 가구 등 차수, 건축 자재 사양, 건설 기술공법 등 관련 기초 자료가 필요하나
 - 국내에서는 KS 규격만 존재하고 실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한 규격과 사양, 사용되는 공법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설계자가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거나 미국·일본 등 해외 자료에 의존

69) 상계서, p116~117

* 업체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표준화된 포맷이 없어 업체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며,

** (미국) 생산되는 모든 자재 정보를 담은 Sweet's Catalogue 판매 (민간)

- 민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 자재정보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졌으나, 시스템 구축 후 실제로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사장
- (BIM의 개념) 다차원 가상공간에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구조, 설비, 전기, 등), 시공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및 폐기까지 가상으로 시설물을 모델링 해 보는 과정을 말함
 - 최근에는 최첨단 디자인 및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 설계 및 시공을 가능하게 해주며 다차원 가상설계건설(VDS : Virtual Design Construction)과도 유사한 개념
 - 건축,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를 포함하여 지침함(국토해양부, 2010)
- (2D 설계 환경) 국내 설계 환경은 대부분 전통적인 2D 기반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해외 소프트웨어에 과도하게 의존
 - 2D 설계는 수작업이 많아 도면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도면간 불일치로 시공 과정에서 도면을 재작성하는 등 비효율 발생
 - 초고층 고난이도 건축물의 경우 비정형 형태의 건축물이 많아 전통적인 2D 기반 설계로는 구현이 곤란
 - 일부 대형 설계·시공 업체를 중심으로 BIM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 표준이 없어 업체간(설계-설계, 설계-시공) 호환성 부족
- (BIM 추진 현황) 최근 국내 건설산업에서는 정부 및 발주기관, 연구기관, 민간을 중심으로 BIM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 및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 BIM 적용지침 개발, R&D과제 추진, BIM발주 사업 등
- 그러나 BIM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술적 환경 등에서 필 요한 제반여건들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BIM의 인식과 저변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공공발주에서 BIM의 도입은 최초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부터 시 작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발주기관과 용역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 며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 BIM과 CAD 작업의 이원화로 인해 BIM 취지에 어긋나 설계사의 이중부담 발생, BIM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지침 부재, BIM 설계품질 평가 기준 모호 등

[표 3-40] BIM 발주의 문제점 <출처 : 서종철 외(2005)>

항목	주요 내용
BIM 도입범위 및 기준의 미흡	BIM 발주 진행에 따른 단계별 BIM 도입 수준 및 적정 기준의 부재로 주체별 BIM 활용범위 설정의 모호함
BIM 적용목표의 불분명	BIM 적용목표(친환경, 시공간섭, 에너지 등)가 없거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에 활용하려고 함
발주자의 BIM 활용능력 저조	발주 담당자의 BIM 이해 부족, BIM 활용 (요구사항) 제안의 능력 부재 및 평가 역량 부족
BIM 요구사항 평가의 부적합성	BIM 전문 평가자의 부재 및 설계 경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항목
BIM 실무 활용의 낮은 수준	실무에서의 BIM 활용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높은 기술적 수준을 요구
BIM 설계 용역비 산정의 어려움	발주자 및 설계자의 BIM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객관적인 설계비용 산정의 어려움
BIM 활용의 이해 부족	시공자의 BIM 경험 부족으로 인한 BIM 설계의 이해 부족
BIM 활성화 제도의 부재	BIM 확산을 위한 제도(인센티브, 교육제도 등) 부재 및 정부차원의 제도 도입 준비의 부족
3D 도면의 활용방안 부재	기존 2D 도면 성과물 및 활용방식과 동일하게 BIM 요구

- 미국의 NCS(National CAD Standard) 등은 설계도면 작성과 관련한 표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유럽은 '80년대 초반부터 Structural Eurocodes를 개발하여 적용 중임

-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공상세도를 설계업체의 실시 설계도와 엄격히 분리해 시공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설계업체를 목적물 위주의 설계시행으로 적산 및 도서가 국내에 비해 간소
- 설계·엔지니어링 기준, 도면, 적산, 시방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여 국내 업체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함

□ 개선방안

-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 사용되는 공법 및 인체 차수를 담은 「한국 건축 정보」 DB 구축
 - 새로 DB를 구축하기 보다 기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 * 건설자재통합정보시스템(www.comiis.or.kr) 등 검토 (건설기술연구원, ~'11.5월)
- 공공 발주사업에서는 정보 DB에 등록된 자재·공법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시스템 활용도 제고
 - * 국가에서는 데이터 포맷을 제시하고 실제 자료 입력은 자재 및 건설업체에서 직접 등록하고 업데이트하는 시스템 구축
- 설계·시공 효율성을 확보하고, 초고층·고난이도 건축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설계 환경을 3D BIM*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가상공간에서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설계·시공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음

** (조달청) '12년 500억 이상의 공사 / '16년 모든 공사에 BIM 설계 의무화

*** (해외) 미국·핀란드·싱가폴 등에서 공공발주에 BIM 적용 확대 중

- BIM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BIM 적용을 위한 국가 표준 라이브러리 체계 구축, 자재 정보 표준화 등 추진

* 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방형 BIM기반 설계 환경 연구 ('13년 착수)

-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BIM 도면 납품이 가능한 체계 마련
- 소규모 설계사무실로 BIM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건축사협회,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세계수준의 BIM 작성체계 구축)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BIM 작성체계 구축함으로써 BIM 활성화 기반 마련⁷⁰⁾
 - 3D 체계를 구축한 BIM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건축·도시·조경관련 프로젝트의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단계에 대한 구조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민간건축까지 확대 적용
 - BIM 설계분야 기술력 확보, 표준 연계규격의 개발, 국제표준과의 호환성 확보 등 건축정보모델링(BIM)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
- (BIM의 보급 확산) BIM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해 BIM의 보급 확산
 - BIM 관련기술 향상 및 실무적용 활성화를 위한 BIM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지원 등 BIM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마련
 - BIM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BIM시스템 적용 사례에 대한 시상 제도 및 인증제도 마련

※ 미국은 건축사협회 주도로 BIM Award를 시상하고 조달청(GSA :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이 공공 프로젝트 입찰 시 3차원 설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70) 상계서, p117~119



[그림 3-10] 미국의 AIA Award 2008 수상작

우수건축물 부문: 미국 오레건주 법원(좌), 디자인프로세스혁신 부문: 홍콩 One Island Estate(우)

* 자료 : 국토해양부(2010),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 해설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실행안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0조에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계정보·기준 및 도서 양식, 자재, 설계자 선정방식 등의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 표준화 및 보급시책으로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표준화 연구성과 활용을 권장하고, 표준화 추진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 *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설계기준 및 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안)

제8조(표준화사업의 추진) ①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표준화 연구 성과를 활용하도록 권고
 2. 표준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② 제1항제2호 따른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③ 건축설계 R&D 투자 확대

□ 검토배경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비 감소)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비는 2006년 1조 4,916 억 원으로 1998~2006년 중 제조업의 R&D 지출은 연평균 14.5% 증가한데 비하여 서비스업은 연평균 5.8% 증가에 머물렀음
 - 민간부문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2.0%에서 2006년 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제조업의 R&D 비중은 1998년 80.8%에서 2006년 90.1%로 증가
 - 우리나라의 총 부가가치 중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2006년 현재 각각 57.1%, 28.0%임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이 제조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
- (건축 · 도시 전문가 양성 부진) 건축 · 도시분야 전문가 양성 및 연구개발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⁷¹⁾
 - 미국은 전체 R&D 투자액의 3%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0.25%에 불과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측면에서도 미국은 전체 R&D 투자액의 9%를 할당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5% 수준에 거침

71) 상계서, p108

- BK21 등 전문인력 육성정책은 SCI논문 요구 등으로 공학·과학 기술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건축·도시분야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
- (건축설계 기술경쟁력 부진) 우리나라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100%)과 비교하여 67%의 수준이며, 특히 건축물의 기획, 설계, 유지관리 부문의 기술수준은 평균이하로 부진

[표 3-41] 한국 건설산업의 시설물/분야별 기술수준(기술선진국=100)

분야 시설물	종합기술	기획	설계	입찰	시공	유지관리
도로	74	73	74	78	76	71
교량	70	69	70	71	73	67
터널	70	73	74	78	76	71
지하구조물	66	62	65	67	71	66
상하수도	65	62	64	67	71	63
하천시설물	72	69	72	70	79	69
해안시설물	64	59	62	66	71	62
댐	68	61	64	71	73	68
플랜트	68	59	63	69	75	73
고층건축물	66	63	65	67	70	62
주거건축물	69	64	68	68	71	63
인텔리전트빌딩	59	53	57	60	65	59
건축설비	63	60	62	63	67	63
평균	67	63	66	68	72	66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산업선진화기획단(2004.12). 「건설산업의 선진화전략」.

- (핵심 기술력 취약) 구조 설계, 제작·설치, 기계·전기·방재 설비 등 초고층 고난이도 건축물에 활용되는 핵심기술력 부족
 - 하드웨어적 시공기술 중심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설계 등 소프트웨어 기술과 핵심소재 등 기초·원천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 부족
- (녹색 건축·도시 조성기술 개발 필요성)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건축·도시 설계기법 및 조성기술 개발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융·복합된 첨단 도시조성 기술이 지난 잠재적 가치의 부각⁷²⁾

72) 상계서, p109~110.

- 초고층건축물, 신도시개발, 플랜트사업 등 우리나라의 건축·도시 산업이 지닌 기술적 잠재력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동남아 등 신흥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신도시개발 경험 등을 연계한 새로운 도시조성 기술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지역,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건축·도시 분야는 CO₂ 발생량 및 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저에너지 건축·도시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요구가 증대
- (신기술 활용 미흡) 현장 적용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신기술신 공법을 기피하는 경향
 -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된 사례가 없어 발주자들이 자사의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을 꺼림
 - * 국내에서 개발된 건축구조 S/W를 활용하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구조 재 20%를 감축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음
- (기술부문간 개별적 R&D 추진)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는 R&D의 통합적 연계방안 모색 필요
 - 설계·건설기술·엔지니어링 등 소프트 기술력 강화와 더불어 유망시장 기술력의 획기적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기대 곤란

□ 개선방안

- (R&D 투자 확대) 건축관련 국가 R&D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건축과 관련한 국가 R&D 투자에 대한 총괄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⁷³⁾
 - 국가 R&D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건축·도시분야의 지속적

73) 상계서, p112~114.

인 R&D 투자확대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R&D 활성화 유도 등 R&D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과 연계 추진

-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 R&D 공모사업 시행, 민간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등 건축관련 R&D에 대한 민관협력 유도 방안 마련
 -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도시 분야 아젠다를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및 연구전문 인력 양성 추진
 -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건설교통 R&D사업) 첨단도시개발 (U-Eco City, 복합공간개발, 도시재생시스템,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핵심 기술력 확보) 미래 기술 수요 대응 및 환경 부하 저감 기술 선점
 - 장수명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등 녹색 건설시장에 대응한 상품 및 기술 개발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고성능 업무용 빌딩, U-City 등 분야별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첨단 기술력 확보
 - 초고층·대공간·녹색 등 고난이도 건축기술에 대한 핵심 요소기술 국산화
 - (재해안전 기술력 확보) 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 변화하는 건축여건에 대응하는 기술력 확보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인재에 의한 건축물의 균열 및 붕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및 조경관련 내진기준 안전 대책 강화
- * 최근 점증하는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과 구조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진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비 등 관련분야간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기준 정비와 방재기술 개발을 추진

**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관련 설비의 보수보강기술개발 및 설계지침 마련

- 초고층건축물 및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시설물에서의 화재발생 등 재해발생시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기준 강화
- (에너지 중심의 설계·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설계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⁷⁴⁾
 -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요소별 설계기준 강화⁷⁵⁾
 - * 난방에너지 저감, 냉방에너지 저감 등을 위한 설계기준 개선
 - 고효율 친환경 설비 및 자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권장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의무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IT기술을 융합하는 등 관련 기술산업 육성을 추진
 - * 대형 화재, 테러 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한 초고층 건축물, 초대형 실내 공간, 대형 지하공간 등 공간 유형별 방재기준 마련 및 개선 추진
- (실용화 실적 확보) 공공 밸주 프로젝트에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선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공 실적을 확보
 - * 인천 시티타워 등 공공밸주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R&D 선정 평가시 실용화 과제의 경우 테스트베드 추진계획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연구 참여기관에 의한 실적 확보 유도
 - R&D 성과 평가시 연구 결과가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높은 평가 점수를 받도록 하는 등 신기술 지정을 적극 독려
 - * 신기술로 지정시 공공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 (건기법 제18조)
- (R&D 연계·협력으로 시너지 극대화) 건설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와 연계·협력하여 시장성, 잠재경쟁력, 연관 산업 매출증대 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고

74) 상계서, p103

75) 상계서, p99

려한 R&D 전략을 수립

- 건설기술진흥계획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R&D 계획과 연계하여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분야의 협력 체계 구축

* 건설기술 분야에서는 Smart 건설기술 확보를 위해 R&D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13개 전략과제를 추진

** 엔지니어링 산업 또한 상세설계 등에 국한된 기술경쟁력에서, R&D 투자 및 기반 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개념·기본 설계 등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R&D 추진

※ 제5차 건설기술진흥계획(2013~2017)

- Green & Smart 건설기술 개발로 시장 선도형 고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
 - 개발에 따른 2차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연순환기능 유지를 위해 저영향 개발(LID: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공공건설사업에 적용
 - 건설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 시설물별 전 생애주기 온실가스 관리 강화
 - 건설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첨단재료, 지능형시설, 프로세스, 재난·안전” 분야 R&D를 지속 추진

[표 3-42] 건설기술분야 R&D 추진계획

분야	개요	전략과제
첨단 건설재료	강재·콘크리트·복합소재 등 소재분야 첨단화를 통해 내구성·강도·탄소 배출 등 기술한계 극복	① 친환경 건설재료 기술 ② 극한조건 대응 건설재료 기술 ③ 고효율·고성능 건설재료 기술 ④ 세계 선도형 콘크리트구조물 혁신기술
지능형 시설물	대형 SOC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통합ENG기술 경쟁력 확보	① 차세대 교량기술 ② 해양 횡단 기술 ③ 지하 복합공간 창출 기술
재난 및 안전 관리	위험요소 관리를 통한 SOC 안전 및 유지관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② 자연재해 대응 기술
프로세스 효율화	건설프로세스의 지능화·효율화, 건설기술의 표준화, 해외진출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확보	① 탄소저감형 스마트설계·시공 기술 ②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계·시공 효율화 ③ 해외진출 인프라 조성 ④ 건설기술 표준화

- R&D 또는 신기술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가 촉진되도록 유도
 - 건설교통기술 대형 실험인프라를 구축하여 R&D 신기술 시험분야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타당성 평가, 추가기술 개발 등)하기 위해 “국토해양기술사업화예산” 확대
 - 신기술 공사비(공사원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발주처의 사용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신기술품셈을 지속 확충
 - R&D 연구자를 대상으로 신기술제도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신기술지정효과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20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

- 선진국 대비 취약한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및 기반 강화
 - 시장성, 잠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기술 5대 분야를 선정하여, 핵심영역의 기술개발 집중 지원
 - 투자 펀드를 활용한 해외 전문기업과의 M&A 활성화 도모
 - 종합적 M&A 지원체계 구축·운영
 - 관계부처 엔지니어링 관련 R&D사업간 연계·협업 강화
- 개발된 기술(개념·기본 설계, 라이센스 기술 등)의 실증을 통한 수행실적 축적과 엔지니어링 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수행경험 기회 마련
 - 개발된 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 기획, 설계, 감리까지 전주기의 사업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발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프로젝트 종합관리 역량 강화
- 대부분의 기업들은 R&D 투자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상세설계·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기술명품기업 선정을 통한 R&D 투자 활성화 및 인센티브 도입
 -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를 통한 애로기술 현장 밀착지원 확대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패키지화 상품 등 기업에 공통 적용가능한 표준화 대상 발굴 및 지원(연간 2건)

□ 실행안

- 녹색 건설시장에 대응한 상품 및 기술 개발
 - 건설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 녹색성(Construction Greening)’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됨⁷⁶⁾
 - ① 에너지·가스 저감 – 화석연료 청정화와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품을 포함
 - ② 대체 에너지 –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상품으로 풍력, 조력이나 조류 발전소 등이 대표적인 상품임

76) 장현승 외(2009), 「녹색 건설상품 진단 및 전망」, 건설산업연구원.

- ③ 시설 효율 개선 –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하거나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
- ④ 환경 복원 및 공간 개선 – 폐자원의 재활용과 같이 기존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거나 지구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해 주는 친환경 보존을 뜻하며 강·하천변 정비 사업이나 수로 확보를 위한 준설, 그리고 수변의 생활공간 개발이 이에 해당
- 장수명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등 녹색 건설상품 구현을 위해 개발된 신기술을 실제 설계 및 시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 응용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 설계, 시공 과정을 환류하여 신기술 실용화를 가속화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고성능 업무용 빌딩, U-City 등 분야별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첨단 기술력 확보
 - 정보통신, 과학, 건설분야 등 광범위한 영역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범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건축분야에서의 유비쿼터스는 현재 우리 건설업계가 찾고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으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유비쿼터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 기획 능력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능력과 같은 기술력, 그리고 사회 인프라에 대한 조정 능력까지 요구됨⁷⁷⁾
 - 또한 유비쿼터스 건설 사업은 대규모의 투자를 수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따르는 손실이 대단히 크며, 아직 시장에서 겸증된 분야가 아닐뿐더러 그 체계도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요구되므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통합하는 조직 구성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업무 영역과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

77) 김우영, 성유경(2011), u-City 추진에 따른건설기업의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림 3-11] u-City 개념도(자료 : 정보통신부)

- 초고층 · 대공간 · 녹색 등 고난이도 건축기술에 대한 핵심 요소기술 국산화
 - 핵심 요소기술과 관련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의 협력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연구 성과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R&D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R&D는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 건설분야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야별 R&D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방안 필요
 - R&D 추진 시, 연구기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통해 R&D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시행분야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

[표 3-43] 국토해양부 R&D 추진절차(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추진절차	주요 내용
연구기획	<p>환경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R&D분야 도출 -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 해양R&D 중장기계획 등과 연계된 중·장기 연구방향 설정 (목표설정, 장기계획, 비전 및 사업발전 전망 등) ※ 주관 : 전문기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p>
시행계획 수립	<p>국가과학기술정책 등 장기계획 등과의 연계성 등을 종점 검토하여 당해연도 세부시행분야 및 지원계획수립 ※ 주관 : 국토해양부, 전문기관</p>
시행계획 확정	<p>국토해양미래기술심의위원회 시행계획 심의 및 방침결정 ※ 주관 : 국토해양부</p>
과제공모 및 접수	<p>시행계획에 따라 R&D사업 지원분야 및 과제공고 공고된 연구 분야에 대해 제안서 접수(민간 연구자, 연구기관, 기업 등 참여가능) ※ 주관 : 전문기관</p>
과제선정 평가	<p>사업의 분야별,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규정(과학기술부 규정 및 부처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평가 실시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신청자의 발표,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실시 ※ 주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p>
총괄조정	<p>과제별 R&D예산 내에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총괄조정위원회 구성)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주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p>
과제선정	<p>과제선정평가 및 총괄조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과제(기관) 최종 심의·확정 ※ 주관 : 국토해양부, 전문기관</p>
협약체결	<p>지원대상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협약체결 - 참여형태가 다양(단독, 주관+협동, 주관+협동+참여+위탁) ※ 주관 : 전문기관(협약체결 : 전문기관 vs 주관연구기관)</p>
진도관리	<p>연 1회 이상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주관연구기관)하고, 회의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 회의결과에 대해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현장평가 및 조사 실시 ※ 주관 : 전문기관</p>
중간·최종 평가실시	<p>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계속과제) 및 연구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관련 규정에 따라 중간 및 최종평가 실시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연구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 결정(5등급) 평가결과 종괄조정(총괄위원회) - 계속과제 : 평가등급에 따라 계속지원/지원중단 결정 - 종료과제 :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제재조치 결정 ※ 주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총괄위원회)</p>
정 산	협약에서 정한 연구기간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수행 중 사용한 연

	<p>구개발비에 대하여 정산 실시 ※ 주관 : 전문기관(정산 : 전문기관 vs 주관연구기관)</p>
성과관리	<p>연구개발 종료 후 다음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개발과 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 촉진을 위한 추적평가 실시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 및 건설기술 R&D사업 홍보 ※ 주관 : 전문기관</p>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9조에서는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필요한 사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으로 하여금 공동연구의 수행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음

[표 3-44] 건축설계산업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 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협약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축서비스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추진 및 연구수행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p> <p>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p> <p>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p> <p>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p> <p>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p> <p>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p> <p>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p> <p>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p> <p>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p> <p>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 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p>	
--	--	--

2) 해외진출 지원 강화

① 해외시장,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 검토배경

- (해외 건설시장 현황) 해외건설부문의 급성장세와 더불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경험을 축적한 업체들은 단독진출이 추진되는가 하면 전문건설업체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의 신규 진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면서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업체 중 중소업체 수는 전체의 95% 이상 차지
 - 중소건설업체의 업종별 해외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건설업체 137개사(27.3%), 전문건설업체 135개사(26.9%), 전기공사업체 106개사(21.2%), 건설엔지니어링업체 98개사(19.6%)
 - 건설시공분야 외에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19.6%로 용역부문의 해외진출도 활발
- (해외 시장 정보 부족) 국내 중소 건축 설계사무소의 경우 영세성 및 자체 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시장 조사 등 초기 매물성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 건축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가 심화되어가고 있으나,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업체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음
 - 중소업체는 해외진출 기반이 부족하고 자체 정보수집능력이 떨어져 대형업체에 비해 효율적인 대응 곤란
 - 해외시장에서 우리 중소업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향상과 전문성 확보 등의 자구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해외진출 지원책 및 금융지원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해외 시장 정보원 미흡) 해외 진출 대상국 또는 지역의 문화적, 계약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사업관계 형성 미흡
 - 해외 진출이 활성화된 외국 업체의 경우 자국 대사관을 활용하여

자국 업체와 현지 발주자 사이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타 문화권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장기 지속적인 사업관계를 유지

* 영국의 BCCB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외 로비활동 및 해외시장 분석자료를 제공

- (글로벌 인재) 글로벌 인재란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해외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언어와 문화소화 역량을 가진 글로벌 건축설계 전문가”로 정의 될 수 있음
 - 국제사업 성격에 적합한 언어 능력, 문화의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 해소를 위한 문화적 소양, 국가별 상이한 제도, 법률, 관리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축설계 전문가 양성이 필요
- (우수 인력부족) 그간 초고층고난이도 프로젝트에 국내 설계기술 인력 참여 기회가 없어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 부족
 - 그간 추진되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취업 및 보수 교육 중심으로 고급 기술자·관리자 수준의 전문가 양성에는 미흡
 - * 미래 친환경 건설산업 인력 양성 사업, 해외건설 인력 양성 사업 등
 - 특히, 초고층고난이도 건축물에 필요한 설계(구조, 설비 포함), 시공, 공사관리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
 - * 국내 설계-ENG 업계의 영세성으로 업계 자체에서 독자적인 인력 양성 곤란
 - 소규모 설계사는 우수인력 유출 부담으로 업체간 교류에 소극적
- 해외건설업의 경우에는 해외근무 경험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외 건설에 특화된 자격증은 별도로 없고 대신 일반 건설분야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이 일부 과목으로 국한되어, 엔지니어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겸비한 엔지니어를 요구하는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건설 관련 전문 자격증의 개발은 전문인력 양성과 동일한 스펙트럼 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

□ 개선방안

- (현지 정보원 확보) 대사관 및 주재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와 보상이 필수적이며, 국내 실정에 맞는 보상방안 검토가 필요
 - 영국의 BCCB의 경우 업체가 직접 해외공관에 접촉하여 커미션을 지불하고 정보를 얻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유관기관 연계강화로 해외 진출 지원
 - KOTRA, 해외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유관기관의 해외 현지 지원거점(Hub)을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
 - * KBC(KOTRA), 해외건설정보네트워크(해건협), 해외진출지원센터(엔지니어링협회) 등
- (맞춤형 해외진출전략 수립) 전략 시장별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 진출전략 마련
 - 우리 업체들의 전략적인 진출이 유망한 국가를 선별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 해당 국가와 그 주변국의 해외시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기 위해, KOTRA와 연계하여 현지 KBC(Korea Business Center)를 해외거점으로 운영할 필요
 - * 한국엔지니어링 협회는 전략국가 10개국, 유망국가 18개국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표 3-45]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선정 전략국가 10개국, 유망국가 18개국

지역구분	전략 국가(10개국)	유망국가(18개국)
아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동/아프리카	UAE,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케냐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베네주엘라
러시아/CIS/유럽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폴란드

- (해외수주지원센터 운영) 또한, 다수의 해외거점을 총괄 운영지원할 국내거점으로서 “해외수주지원센터”를 건축진흥원 내에 설치하여 운영
 - ‘건축설계 해외수주지원센터’는, 현지 정보 조사, 프로젝트 발굴, 발주처 네트워크 구축, 진출기업 컨설팅, 현지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지원 등을 수행할 해외거점으로부터 수집된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DB화하여 관리하면서 국내기업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 해외수주지원센터 운영방안

- (기본방향) 유관기관의 기존 해외거점을 적극 활용하고 유기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
- (조직형태) 국내본부 + 해외거점
 - ① 국내본부 : 건축진흥원 내 설치운영
 - 운영 및 관리 총괄,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개발
 - 국내 건축서비스 기업의 Needs 수렴
 - 해외거점 수집 정보를 국내 수요자에 제공(On/Offline)
 - 해외거점 운영/관리 및 성과평가
 - 협력사업 및 시장개척 활동 개발 및 운영
 - 센터 본부와 해외거점과의 연계 및 커뮤니케이션
 - 계획 수립, 사업 개발, 사업 운영 지원
 - ② 해외거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의 KBC
 - 해당국 및 주변국의 시장동향 파악
 - 수주 활동 지원
 - 발주정보 수집·분석
 - 현지 네트워크 구축
 - 각종 협력사업 지원 등
- (운영평가) 월 1회 정기협의회(국토부, 건축진흥원, KOTRA)를 통해 운영현황 파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 분기별로 확대운영위원회(국토부,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련업체, KOICA 등) 개최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 및 운영상황 점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표 3-46]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27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시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및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3. 해외시장 진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 건축서비스 관련 해외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건축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서비스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8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p>

	<p>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진흥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3.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	--	--

□ 국내 건축가 및 건축문화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⁷⁸⁾

- 한·미, 한·EU FTA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내 건축가와 건축문화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
 -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건축가와 건축문화에 대한 국제 홍보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
- ※ 주한 영국대사관은 월 알숍 등 이름난 건축가에 대한 정기적인 초청 세미나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자국의 건축가와 건축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원
- ※ 네덜란드는 건축재단, 건축협회(NAI) 등을 통해 자국의 역량있는 건축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 홍보 및 출판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
 -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자국의 건축가가 국제적인 건축·도시 설계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 미국의 무역개발부(TDA), 영국의 컨설턴트 및 건설국(BCCB), 일본의 해외건설

78) 국토해양부,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 해설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0), p14

협회(INC) 등에서는 자국의 건축가들이 해외시장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세계시장에 대한 조사분석·연구·교육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우리나라는 초고층건축물, 신도시개발, 산업용 플랜트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건축설계분야에서도 여러 설계사무소가 알제리, 예멘,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LH공사의 아제르바이잔 신행정도시개발 건설사업총괄관리(PM) 프로젝트 수주(2008)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설계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



한국형 신도시 수출 1호로 기록된 LH공사가 수주한 아제르바이잔 신행정도시 개발사업은 면적 7,200만m²에 인구 10만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 1단계 부지조성을 시작으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공사비는 총 280억달러가 소요될 예정
LH공사에서 수주한 PM계약금액은 2,400만유로(450억원)로 향후 2, 3단계 사업관리와 설계용역을 수주할 경우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

[그림 3-12] LH공사에서 PM을 맡게될 아제르바이잔 신행정도시개발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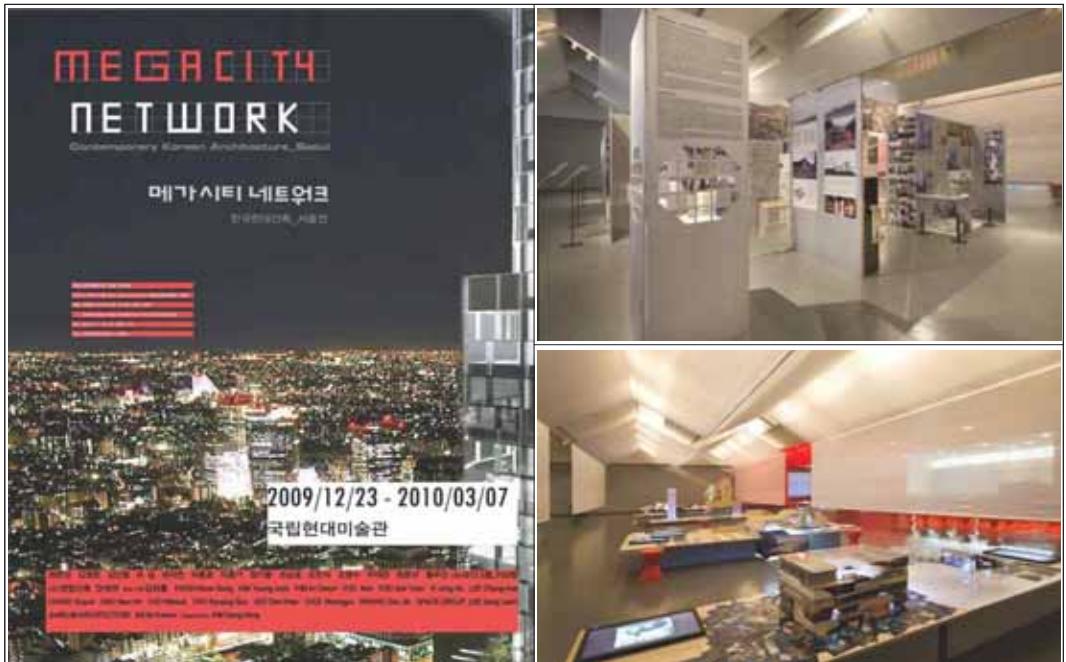
- ※ 공간 그룹 : 양골라 탈라토나컨벤션센터, R&P 빌딩, 카자흐스탄 메가센터 주거단지, 파크뷰 오피스타워
회립 건축 : 홍콩 주거단지, 중국 청따오 천희국제촌 마스트플랜, 베트남 호찌민시 사우스 사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프로젝트
무영 건축 : 중국 청따오 선샤인 코스트 주거단지,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개발 프로젝트
정림 건축 : 인도 첸나이 게스트하우스, 리비아 트리폴리호텔
이로재건축 : 중국 베이징 짜오와이 주상복합시설, 일본 기타가타 지푸 주거단지
범 건 축 : 중국 쿤밍 리자시 신도시 마스트플랜, 일본 기타가타 지푸 주거단지
이·상 건축 : 중국 항저우시 화원세기광장 설계, 푸단대 100주년기념 체육관
단우 건축 : 중국 엔타이 애플시티 골프클럽하우스 및 온천호텔
(자료 : 한국건축가협회)

[그림 3-13] 우리나라 설계업체의 세계시장 진출 현황

-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주를 계기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설계와 시공, 공사관리를 패키지화하는 고도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고부가가치 설계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축가와 건축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해외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이 중요함을 깨닫고 국제적인 전시와 강연,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함

- ※ 메가시티 네트워크(Megacity Network): 한국현대건축전은 우리나라에서 기획한 최초의 국내 건축가 해외그룹전시회로 2007년 첫 프랑크푸르트 전시에서의 호평을 시작으로 베를린, 틸린, 바르셀로나 등 2년간 총 168일간의 유럽 순회전을 거쳐 2009년 12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내전시를 기점



[그림 3-14] 메가시티 네트워크: 한국현대건축전

- (국제사업 전문가 육성) 해외사업의 경우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수주계약마케팅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
 - KOTRA 글로벌연수원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전문가 교육과정 연계 활용
- * KOTRA 글로벌연수원 교육과정(www.kotraacademy.com)

[표 3-47] KOTRA 글로벌연수원 교육과정

분야	과정명	주요내용
지역전문가 육성과정	신흥시장 집중분석(중남미, 중동, 브라질, 필리핀, 폴란드, 터키, 태국)	경제 및 비즈니스 문화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시장특성 및 산업구조 등
	신흥시장 비즈니스스쿨(중국)	
	주제별시장진출(유통, 프랜차이즈, 플랜트, 의료바이오)	물류 및 유통시스템 투자절차 및 유의사항 소비자특성 등
	FTA지역 진출	FTA 주요 협정내용 원산지 결정기준 FTA 활용 진출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등
	리스크관리(노무, 세무)	해외투자타당성조사
	해외투자진출	해외투자자금조달 해외투자조세실무등 현지 조세제도 금융 및 외환관리제도 물류/통관제도 법인설립 절차 계약유의사항 기 진출기업 및 공단 방문 등
	해외투자스쿨(캄보디아/미얀마)	
	글로벌마케팅 실무	글로벌마케팅이해 및 실무 글로벌마케팅관행과특성 전략적인수출마케팅상담 등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계약/커뮤니케이션)	해외마케팅전략 및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경로분석 국제계약실무 등
	해외전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CEO스쿨	해외사업개발및전략
	글로벌 중견기업 벤치마킹 연수 (오사카)	글로벌마케팅 실행계획 수립 해외사업 마스터플랜 작성 등
	글로벌 전문가 과정	
	외국인 투자유치 PM과정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실무	FDI제도 및 주요내용
	외국인 한국어 교육	투자유치인센티브제도
	홍보/커뮤니케이션	투자유치IR 등
	신재생에너지(수처리유럽연수단)	
산업별 특화 연수 (해외연수)	기술사업화(이스라엘연수단)	
	히든챔피언(유럽, 해외창업, 실버산업 등)	첨단 신재생에너지기술 벤치마킹 전시회 참관 등

- 프로젝트의 대형화 및 복잡화 추세에 따라 종합적인 설계역량이 필요하며 또한 국제금융, 프로세스 관리역량 등 전문분야별 인력 양성이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와 건설기술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인원, 해외연수, 강사의 전문성 등 보완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발
- 고부가가치 핵심 영역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경험축적
 - 국제시장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한편, 해외 진출 인력기반 확대를 위해서 국제 인증자격 취득자 양성 확대
 - * 수익성·성장성·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전략분야 선정
 - 업계 의견을 수렴, 초고층고난이도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설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조사하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 마련
 - * 전문 교육기관, 대학원에 전문과정을 설치하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
- 국내 건축설계 기술인력이 해외 업체, 발주기관 등으로 파견을 가거나, 해외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도 마련
 - *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해외경력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설계-시공-감리-해외 등 복합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업종간, 업체간 협업 및 인력교류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국내업체-해외업체, 설계사-시공사, 건축사-기술사 사이의 협업 및 인력교류 적극 권장
 - 특히,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 국가자원의 집중은 필수적이므로, 해외건설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양성교육은 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해외 인력 pool을 만들어 해외진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 네트워킹을 국축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기술인력 육성

- 현재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 인재정보 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으나 인력수급에 대한 기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임
- 기업별로 비공개 인력풀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의 인력수급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간 경쟁보다는 협조의 관계로서 인력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비전이 제시될 수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로 평가됨
-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 미국은 해외 소득에 대해 8만 달러까지 면세이며, 일본·영국은 전액을 면세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인력을 내보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음
 - 최근 직업선택의 기준이 일과 삶의 질 균형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재는 경제적 보상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젊고 역량 있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행안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에는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근거 및 양성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

[표 3-48] 건축설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하거나 창업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	제00조(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3.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건축서	제0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0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0호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p>원을 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짧고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제한할 수 있다.</p> <p>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 <p>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0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p> <p>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0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연수교재비 및 	
--	---	--

	<p>실습기자재비</p> <p>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필요 경비</p> <p>② 이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0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1. 제00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p> <p>3. 제00조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p> <p>제00조(젊고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p> <p>① 법 13조 제4항에 따른 젊고 역량있는 건축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만 40세 이하인 자로서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입상자</p>	
--	---	--

	2. 건축대상 수상 작의 설계자 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	--	--

② 책임보험제도 도입

□ 검토배경

- (한·미 FTA에 대응하는 산업기반 마련)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결과, 건축설계업은 국가간 전문직 상호자격인정을 통하여 자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대국에서도 동일 직종을 가질 수 있음(한미FTA제12장, 부속서 12-가)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12-가(전문직 서비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면허 및 증명에 관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 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며,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해 상호 합의된 전문직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면허 약정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그러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는 부록 12-가-1에 열거된 분야 또는 하위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부록 12-가-1(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건축 서비스
3. 수의 서비스

- (건설공사 관련 보험제도) 건설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험이 개발되어 왔으며, 크게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및 기타 보험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공사목적물은 본공사와 가설공사 모두 건설공사보험의 담보 대상이지만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Loss of Damage Due to Faulty Design)는 건설공사보험의 담보 대상이 아니며, 추가적으로 설계전문가배상책임보험(Design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으로 담보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공사보험에 독일식 약관과 영국식 약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설계 보상 내용의 차이점은 다음 같음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 독일식 약관에서는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loss or damage due to faulty design)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재산 담보 부문 특별 면책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식 약관은 설계 결함을 교정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나, 그러한 결함의 결과로 인해 공사 목적물에 발생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함을 규정하고 있음
- 설계 결함은 공사 보험의 담보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설계 결함 자체를 교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나, 설계 결함으로 발생된 사고에 의해서 설계 결함이 있는 목적물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주변 공사에 발생하는 재물 손해는 영국식은 보통 약관에서 담보하고 독일식은 설계 결함 담보 특별 약관 가입시 담보가 가능함

- (문제점) 국내 건축설계업체의 경우 한·미 FTA협정이 해외진출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국내 업체의 경우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LI)* 등록의 어려움으로 해외 사업 참여의 경쟁력 낮음
 - 500만 SDR(81억원, `12년 환율기준) 이상의 정부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외국의 설계·감리용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국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보험가입 필요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PLI)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와 같은 전문직업인이 자신 또는 피고용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타인에 대해 지는 법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나, 공사관계자로 한정하여 보면 건축사, 엔지니어링 및 감리자 등이 대상이 됨

- 한·미 FTA를 계기로, 글로벌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건축설계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의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건설공제조합 해외 보증 강화*,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전용재원·기관 설치 등 보증애로 해소방안 검토

* 건설공제조합(억원) : ('11년) 678 → ('12년) 1,115 → ('13) 2,000

□ 개선방안⁷⁹⁾

- (건축사손해보험제도 개선) 현행 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용역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에도 클레임 청구가 작다는 점과 사고 시 보험 약관상 담보범위가 작아 발주청, 용역업체, 제3자의 피해보전에 크게 미흡하다는데 있음
 - 건축사법은 발주자의 재산손해만을 보험담보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어 유사법률인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담보범위 보다 작음
 - 보험상품은 발주자의 재산손해외에 제3자의 재산손해를 기본담보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보험의 법률상의 기준을 임의로 넓히는 형태가 되어 불합리함
 - 한편 제3자의 손해 중 인적사고는 피해금액의 과소를 떠나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하면 보험담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현행 건축사손해배상보험은 용역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설계 과실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용역목적물가액(시설물가액) 전체금액에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필요
 - 현재 건축사 용역대가는 설계의 경우 3%, 감리의 경우 5% 이하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은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에 크게 미달하여 보험제도의 효용성이 저하됨
 - * 독일 건축사배상책임보험의 대물배상은 공사금액의 20~30%(Structural Engineering의 경우 30~40%)수준이며 프랑스 건축사배상책임보험은 연간 단위로 공사금액에 유사한 수준임
 -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며 설계, 감리 등 용역업자의 배상 책임액이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 이 높음

79) 차일권(2012) 「건축사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p.57–63. 재정리.

- (보험기간 연장) 건축사손해배상보험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어 건설공사 완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보험담보가 아닌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 현재 보험(공제)약관은 완공 후 하자담보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특약으로 담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약 가입이 저조함
 - **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일반 건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규정
- 또한 설계용역의 경우 작업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증권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경우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의 보험기간과 이행(하자)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
- 건축사손해배상보험의 보험기간 확대는 보험료의 상승을 우려할 수 있으나 이행(하자)보증증권을 추가구입 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축사의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은 완화 될 수 있음

③ 해외시장 개척자금 등 경제적 지원

-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 등
- 해외 프로젝트 조사비 지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금융지원
 - 미국은 무역개발청(TDA)을 통해 프로젝트조사비를 지원하며, 미국수출입은행, OPIC, USAID 등을 통해 금융지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

미연방무역개발청(USTDA, United State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 (개요) 개발도상국과 중소득국가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고, 미국기업의 사업개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으로 타당성조사,

사전방문, 훈련, 워크숍, 기술지원의 업무에 대하여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

- (지원목적) 미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빈곤한 국가의 부채 탕감
 - 다자간의 개발원조
 - 미국의 정치 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경제 원조
 - 인도주의적 원조
 - 다각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및 군사 원조
 - 세계안보, 경제, 정치적 목표 등
- (지원대상) 미국 기업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달과정을 갖춘 사업, 미국 상품과 서비스 판매 기회를 제시하고, 프로젝트가 발주된 국가의 최상위 개발 계획과 현지 미국 대사관의 지지가 있는 사업, 자국으로부터 지원과 보조금을 받는 사업, 외국 회사로부터 강한 경쟁에 직면한 사업 등
- (지원방법) 지원방법으로는 해외증여, 미국기업과의 계약체결, 국제개발 금융기관의 신탁기금 사용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타당성조사 : 개발도상국과 중소득국가의 개발사업에 대한 미국기업의 타당성 조사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비용은 타당성조사 실시기업과 USTDA가 절반씩 부담
 - 사전 방문 : 미국 업체가 특정 사업에 요구되는 설계,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지 조달공무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미국 공급자가 현지 의사결정권자에게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할 기회를 주면서 미국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방법
 - 워크샵 : 현지 의사결정권자가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친숙하도록 하며, 회의 참석자가 사업의 세부 기술, 재정 및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 기술 원조 : 지원대상국의 특정 분야 개발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 제도 등을 마련해주고 향후 수출을 위한 기회를 증진시키는 방법
- (현황) 2006년 기준, USTDA는 총 268개 사업을 대상으로 4,829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미국 기업의 사업 수주와 직결되는 기술지원, 사업타당성 조사에 집중

[표 3-49] USTDA 승인 실적 (단위:100만 달러)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사업발굴	2.1	165	2.0	131	2.0	99
사업타당성 조사	21.5	59	23.5	57	14.7	40
해외수입자 초청사업	3.4	30	3.3	31	2.2	19
기술 지원	25.2	93	23.2	109	25.2	91
무역관련 교육	2.6	3	2.5	4	2.2	7
조달 지원	0.1	1	0.0	12	—	—
무역박람회 개최	1.3	11	2.4	12	2.0	12
합계	56.2	362	56.9	345	48.3	268

•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업에 해당하는 에너지 및 발전, 교통, 수자원·환경 부문은 약 58.9% 임

○ (지원절차) USTDA의 사업추진절차는 7단계로 정의됨



[그림 3-15] USTDA의 프로젝트 지원 절차

〈자료 : USTDA Annual Report 2003〉

- 금융조달 지원을 통한 수주지원 업무 수행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조사 사업, 프로젝트 사업 및 대외협력기금(EDCF) 재원 확충
 - ODA 지원 해외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업체와 관련 부처간의 지속적인 협의 강화
 - 자체 신용만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 자금 확보 지원
-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증 및 보험지원 확대
 - 해외사업 진출에 대한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업무 확대 및 금융기관 제휴를 통한 보증 등 추진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해외체류사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등 특례 조치
 - *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살펴보면 월 소득공제 한도가 15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소득보전에는 미흡한 실정
 - 해외건축서비스법인세 감면제도 도입
 - 우수해외건축서비스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제4장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

1. 제도개선 방안
2. 사업추진 방안
3. 추진전략
4. 결론

1. 제도개선 방안

1) 발주제도 및 발주평가기준 개선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의 하위법령 마련
 - 고시금액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 자격요건의 전문성 강화 및 심사위원 명단 공개 등의 사항 포함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관련 법령 및 고시 및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 설계공모 제출물 간소화(공모방식에 따라 차별화) 및 공모안 작성 비용 보상 강화, 심사위원 자격(건축분야 전문가로 한정) 등 포함
 -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개정 내용으로는 제안공모방식 신규 도입, 2 단계 공모방식 관련 세부규정 마련 등 반영
 - 조달청, 행안부 규정 중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후 통합운영 또는 타 규정 개정을 유도

□ PQ, 기술제안 등 건축설계 평가기준 개정안 마련

- 적격심사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용역비 규모별 건축설계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 적격심사에 의한 평가방식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비중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평가기준 개정 및 활성화
- 설계공모 실적 신설, 책임건축사·참여기술자 등급 삭제, 교육훈련 폐지, 재정상태 건설도 기준 완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폐지 등

2) 기획업무 분리 및 설계대가기준 개선

□ 기획업무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를 근거로 시행령에 기획업무의 법률적 근거 마련, 「건축사법」 제2조(정의), 제19조(업무내용)에 기획업무 명시 등의 방안 검토

□ 건축사 설계대가기준 개정안 마련

-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개정
- 현행의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지급규정(건축사법 제19조의 3)으로는 대가기준 준수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보다 일반적인 법률에 준수 의무 명시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를 근거로 시행령에 대가기준의 법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항 신설
- 실비정책가산방식 도입을 위한 설계대가지급 기준 개선 연구용역 추진을 통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예산운용지침」 개정안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기획비'를 신설하여 기획업무에 대한 대기지급 근거 및 규정 마련

3)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 표준계약서 개정

- 건축설계의 계약유형을 분류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응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 표준계약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 「건축사법」 개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의 하위법령 제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8호_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행안부예규 제197호_지자체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4) 건축사 제도 개선 및 건축사 책임 강화

□ 「건축사법」 개정안 마련

- 건축사 실적관리제도 개선, 건축사 법인제도 도입, 건축사공제조합 별도 운영을 위한 개선안 마련 등 「건축사법」 개정안 마련

□ 건축사 책임강화 제도 방안 마련

- 민간보험사 참여유도 정책을 제안하여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제도 및 건축사손해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2. 사업추진 방안

1)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 건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건축설계산업의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하위법령 마련
-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하위법령 제정

□ 건축설계산업 동향 DB 구축 및 보고서 발간사업 추진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건축설계산업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건축설계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 제고
- 건축설계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매년 전자정보, 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 제공

□ 공공건축 DB 구축 사업 추진방안 마련

- 시설유형, 지역, 노후도, 조성시기, 면적, 투입예산 등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구축 및 관리,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영주시, 수원시) 및 국가기관(외교부, KOICA)의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및 정리
- 우수 공공건축사례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제공

□ 건축물·설계자 정보제공 사업 추진방안 마련

- 국내 공공 및 주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상제도를 통해 수상한 건축물 및 건축가, 도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

- 건축가, 건축물, 공간 등 개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과 도시공간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해당지역의 건축자산으로 활용

2) 건축설계 및 DB 통합,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

□ 「한국건축규정(KBC)」 추진방안 마련

- 「건축법」 제68조(기술적 기준)의 개정 및 관련 타 법령 개정 추진
- 건축 관련 제반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과 세계 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국가 표준 건축설계기준 개발 추진
- 수많은 법령 및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 추진

□ 건축설계분야 BIM 적용 방안 검토

- 건축설계에서의 BIM 설계시스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BIM 활성화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BIM을 활용하여 건축설계의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정부 차원의 건축설계 정보 환경 구축 및 제공 선행
- 국내건축설계환경의 BIM 단계적 전환 방안 마련

□ 한국건축정보 DB(건설자재통합정보시스템) 추진

- 건축 전 분야에 현 기술을 집약하여 국제화·표준화된 국가 표준 건축설계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기준운영체계 구축

□ 건축설계분야 R&D 확대 방안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의 하위 법령 제정
- 건축 진흥원을 설립하여 건축 설계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책, R&D, 교육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건축설계 분야의 R&D 요소 기술 개발

3) 건축문화진흥 및 신진건축사 육성

□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일정규모 이하 공공건축물의 신진건축사 대상 제한공모 적용규정 마련

□ 대국민 건축문화 홍보 및 위상 제고

- 세종시 건축도시박물관 건립을 통한 건축문화 홍보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TV, 신문 등 기획 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 건축문화 관심 및 이미지 제고 추진
- 각종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

4) 건축사 해외진출 지원

□ 시장개척자금 지원, 세제혜택 등 건축사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의 하위법령 제정
- 해외 진출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규모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사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계약 후 신시장 개척 위로금이 아닌 선지금 형태의 시장개척지원 자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
- 해외체류근로자 및 해외진출업체 세제 감면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해외진출 공동협의체 구성방안 마련

- 해외사업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

□ 건축진흥원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 건축진흥원 내에 해외진출관련 전담부서로써 해외수주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3. 추진전략

□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 3장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안된 3대 추진전략, 8대 추진과제, 22개 세부실천과제의 실행방안으로써 법령 제·개정, 지원마련, 연구수행, 사업추진 등의 추진방안 마련
- 각 세부 실천과제별로 추진상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령 및 추진 주체와 협조기관을 구성

□ 추진전략별 연차별 실행방안 수립

- 세부 실천과제별 추진방안의 성격에 따라 단기과제(‘13), 중기과제(‘14), 장기과제(‘15~) 등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건축설계산업 육성 전략의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을 위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 업무와 소규모·신진업체 육성을 위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 등을 단기과제로(‘13) 실행 가능
- 그러나 법·제도 제·개정 및 사업 추진 등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세부실천과제들은 중장기 추진방안으로 계획

□ 추진전략의 실행력 제고

- 22개의 세부실천과제의 제도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 및 건축설계산업 관련 법제도 개정의 실천적 대안마련을 위한 실행 TF 구성·운영
- 산·학·연·관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행 TF의 운영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및 소통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의 장 마련

4. 연구의 결론

- 건축설계산업의 최종생산물인 건축물, 도시공간의 창조는 생산과정에서 그 자체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소비단계에서 타산업의 생산 요소로서 작용하고 부가적으로 문화·관광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⁸⁰⁾
- 건축·도시 공간의 문화·관광적 가치와 함께 지식서비스산업의 산업경쟁력 및 부가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열악한 건축 설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시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결과 3대 추진전략과 8개 추진과제, 그 안에 22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축설계산업을 지식기반의 산업구조로 정립하기 위하여 창의력·기술력 중심의 발주·평가제도로 개선하고, 기획업무의 기능 강화,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
- 둘째, 건축설계의 산업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산업의 동향 진단 및 DB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소규모·신진업체의 육성기반 마련, 건축문화 진흥방안 등의 추진과제를 도출
- 셋째, 건축설계산업의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축설계 규정의 통합, R&D 투자 등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방안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제시
- 본 결과는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축적된 기존의 다양한 논의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설계산업 육성 추진전략 및 방향을 도출한데에 의의가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들의 실천적 대안 도출을 향후 과제로 제안함
- 본 연구는 건축설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기틀로 작동할 것이며, 국가 신성장동력원으로서 건축설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국가 건축정책 마련 및 법·제도 개선, 사업 추진의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80) 김지엽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향', 대한건축사협회, p.14.

□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실천과제	주요내용	추진방안 (법령 제·개정 / 자원 등 마련 / 연구 수행 / 사업추진 등)	추진상 문제점 / 선결과제	추진단계			관련법령 등	주관 / 협조
						'13	'14	'15		
자치기반 산업구조의 정립	청의성·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1.1. 설계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설계자 선정	- 용역비 1억 이상 다종이용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의무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하위법령 마련	- 설계공모 건수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업무 가중 우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기재부·안행부·조달청		
		1.1.2 설계공모방식 개선 및 다양화	-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및 명단 공개 - 세출률 간소화,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강화 - 제안공모, 2단계 공모 등 공모방식 다양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하위법령 마련 - 설계공모운영지침 및 평가기준 제개정 - 조달청, 행안부, 자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 운영 개별기준 개정 유도	- 타 부처 및 기관 소관 개별기준 개정 지연·난항 우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기재부·안행부·조달청		
		1.1.3 기술력 위주의 발주 평가기준 개선	- 건축설계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에서의 사업수행능력평가비중 확대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활성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하위법령 마련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평가기준 제개정 - 국가 및 자본계약법 시행령 (자자기본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우선 적용) 조항 개정 - 조달청, 행안부, 자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 운영 개별기준 개정 유도	- 업체간 이해관계 대립 우려 - 타 부처 및 기관 소관 개별기준 개정 지연·난항 우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가계약법 자본계약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기재부·안행부·조달청		
	1.2. 공공건축 기획업무 제도 도입	1.2.1 공공건축 기획업무 제도 도입	- 기획업무의 정의 명확화 - 기획업무에 대한 대가기준 규정 마련	- 건축사법 제2조(정의), 제19조(업무내용) 개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자질,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기획설계업무 내용 추가	- 기획업무의 범위, 대가 기준 등 마련 선행 필요 - 안행부 등과의 협의 난항 우려	○	건축사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기재부·안행부		
		1.2.2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체계 구축	- 설계공모 유도를 위한 지원업무 법적근거 마련 - 설계공모 지원·대행 서비스 운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하위법령 마련 - 설계공모 대행사업 추진 (AURI 공공건축지원센터)	- 공모업무 지원·대행주체의 공정성 확보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AURI		
	1.3.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1.3.1 표준계약서 마련	- 다양한 계약유형에 대응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 표준계약서 마련 (건축사협회 연구용역 추진)	- 계약유형분류 및 업무표준화 선행 필요	○	건축사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건축사협회		
		1.3.2 설계대가기준 개선	- 공사비요율방식 개선 (인건비 승수방식 전환) - 실비정책가산방식 도입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기획과 연구용역 추진)	- 건축설계용역 유형별 업무분류체계 및 투입 인원수 신정기준 마련 필요	○	건축사법	국토부(건축기획과)		
		1.3.3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 적용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하위법령 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8호 개정 - 지자체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행안부예규 제197호 개정 - 표준계약서에 설계변경 관련 조항 마련 (건축사협회 연구용역 추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 산정기준 마련 필요	○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기재부·안행부, 건축사협회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2.1. 설계산업 동향진단 및 DB구축	2.1.1 설계산업 관련 통계자료 개발 및 DB 구축	- 건축서비스산업통계 DB 구축 및 통계자료 개발 - 연간 보고서 발간	- 건축서비스산업통계법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하위법령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DB 구축사업 추진(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보고서 발행사업 추진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원활한 통계 데이터 수집 소요비용 마련 및 자료수집의 어려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AURI		
		2.1.2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활용	-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구축 및 관리 - 공공건축 관련 매뉴얼 개발 보급 - 우수 공공건축사례 교육 및 홍보	- 건축서비스산업통계법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하위법령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통계법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하위법령 마련 - 공공건축 DB구축사업 추진 (AURI 공공건축지원센터)	- 정보공개, 유통 전략수립 선행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AURI		
	2.2. 소규모·신진업체 육성기반 마련	2.2.1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 만45세 이하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지속·확대 추진	-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 지속 추진 - 일정규모 이하 공공건축물의 신진건축사 대상 제한공모 적용규정 마련 (장기)	- 기성 건축사의 역차별 문제 제기 우려	○	-	국토부(건축문화경관과)		
		2.2.2 건축사 경력관리제도 도입	- 소속건축사 실적 인증제도 마련	- 건축사법 제19조의2 (업무실적의 관리 등) 하위법령 개정	- 법인제도 및 발주제도와 연계 검토	○	건축사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건축사협회		
		2.2.3 건축사 법인제도 도입	- 건축사 법인제도 도입	- 건축사법 건축사법인 관련 규정 및 하위법령 신설	- 법인도입에 따른 업무 책임범위 규정 필요	○	건축사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건축사협회		
	2.3. 건축문화진흥	2.3.1 건축물·설계자 정보 제공	- 건축물·설계자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시행	- 건축서비스산업통계법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하위법령 마련 - 건축물·설계자 정보제공 사업 추진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시스템 개발에 따른 비용 소요	○	-	국토부(건축기획과) / AURI		
		2.3.2 우수건축자산 지정·지원	- 건축자산·전통구역 지정제도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0조 (우수 건축물등 지정 지원) 하위법령 마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전통에 관한 법률안(건축자산 전통구역 지정 등) 마련	-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문화경관과)		
		2.3.3 건축문화 홍보사업 추진	- 건축문화 진흥사업 시행 - 언론매체를 통한 건축문화 홍보 활성화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전통에 관한 법률안 마련 - 세종시 건축도서박물관 건립 추진 - 각종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 - TV, 신문 등 기획 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 건축문화 관심 및 이미지 제고 추진	- 박물관건립 소요 재원 확보의 어려움 (건설청 연계 필요)	○	-	국토부(건축문화경관과)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	3.1.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	3.1.1 건축설계 규정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 KBC 통합 공고 - 건축법 체계 정비	- 건축법 제68조 (기술적 기준) 개정 및 관련 타 법령 개정 추진 - 건축법 전면 개정 (장기, AURI 연구 추진)	- 관련부처간의 이해관계 조정 난항 예상	○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3.1.2 설계 표준자료 DB 및 BIM 환경 구축	- 한국건축정보 DB 구축 - BIM 기반으로 국내설계환경 단계적 전환	- 한국건축정보 DB 구축사업 추진 (건기연 건설자체통합정보시스템 개편 등) - 건축설계에서의 BIM 환경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논의 선행 필요 - 특정 BIM 프로그램 편중·종속 우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3.1.3 건축설계 R&D 투자 확대	-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하위법령 제정 - 건축설계 분야의 R&D 요소 기술 개발	- 핵심요소기술 선별 -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도출 어려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2. 해외진출 지원 강화	3.2.1 해외시장,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 해외시장 진출관련 정보제공 사업 - 해외사업 공동협의체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하위법령 제정 - 건축진흥원 설립을 통한 해외수주지원센터 사업 추진 - 해외사업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	- 기초조직(해건협 등)과의 연계 검토 - 정보수집의 어려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국토부(해외건설정책과, 기술정책과), 해외건설협회, KOTRA, 엔지니어링협회, 건축사협회		
		3.2.2 책임보험제도 도입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제도 활성화 - 건축사손해보험제도 활성화	-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개선 - 민간보험사 참여여도 정책 마련	- 보험가입금액 따른 부담 증가	○	건축사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건축사협회		
		3.2.3 해외시장 개척자금 등 경제적 지원	- 보증 및 보험지원 확대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하위법령 제정 - 시장개척지원자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 -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개선 - 해외체류근로자 및 해외진출업체 세제 감면	- 예산 확보의 어려움 - 단기간 가시적 성과 도출 어려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부(건축기획과) / 기재부, 건축사협회		

참고문헌

□ 문헌

- 국토해양부(2009), 「건축정책기본계획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해양부(2010),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해설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지엽, 심우일(2011),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향」, 대한건축사협회.
- 김진숙, 김상호, 김영현, 김민우(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우영, 성유경(2011), 「u-City 추진에 따른 건설기업의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한건축사협회(2012) ‘국내건축사 경쟁력 강화 및 우수건축사 육성방안’
- 박상근(2002), “전문직을 위한 회사형태에 관한 연구”, 법조 2002:12(Vol. 555), p.237–238.
- 서수정, 김영현, 조시은, 류현숙, 정지범(201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종철, 김한준, 김인한(2005), “건축설계 단계에서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개방형 BIM기반 품질관리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3권 제4호, pp.3–15.
- 엄철호, 임유경(2012),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유광흠, 심경미, 김혜련(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유광흠, 진현영(2010),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유광흠, 진현영, 김혜련(20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훈종(2005),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p.301.
- 임현성, 김영현(2012),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구소.

장현승, 이복남, 김우영, 장철기(2009), 「녹색 건설상품 진단 및 전망」, 건설산업연구원.
차일권(2012), 「건축사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통계청(2005), 「서비스업 총조사보고서」
USTDA(2003) USTDA Annual Report 2003

□ 웹사이트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http://www.auric.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KOTRA, www.kotraacademy.com